2025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인사혁신처

정기재산변동신고 체크리스트

★ 빈칸에 v 표시하면서 점검해보세요 ★

- 등록대상 친족 (직계 존·비속) 이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함을 알고 계시나요? ☐
  - 고지거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 '25.1.1.~1.31.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신청서와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06~07. 참고)

- 등록기준일인 '24.12.31. 기준으로 신고하였나요? ☐
  - 신고하는 당일이 아닌, 2024년 12월 31일 시점의 보유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계 존·비속을 친족 항목에 등록하였나요? ☐
  - 기존 등록된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신고서 STEP2, 친족 항목에서 나열된 해당사항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본인과 친족의 거주정보를 현행화 하였나요? ☐
  - 등록기준일인 '24.12.31.기준으로 본인과 친족의 거주 정보(기숙사, 자취방 등)를 최신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재산을 신고하셨나요? ☐
  -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부동산 등 제공 정보 열람하였나요? ☐
  - '열람'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제공된 정보들의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보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 신고하셨나요? ☐
  - 개별 계약 건별(호실, 동별 등)로, 해당 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로 거주중인 경우 전세(임차)권을 신고하였나요?
  - 본인 또는 친족이 전·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 해당 보증금을 건물 항목의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족 간 채무 관계, 정확히 신고하셨나요?
  - 자녀에게 자취방 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사업자금 등을 빌려 준 경우 등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가족관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를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ex) 의무자가 모친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경우, 본인 명의 채권 5천만원, 모친 명의 채무 5천만원 각각 신고의무자가 자녀 자취방 전세보증금 1억원을 빌려준 경우 의무자 명의 채권 1억, 자녀 명의 채무 1억 각각 신고하고, 자녀 명의 건물 전세(임차)권 1억원 신고

- 금융정보 열람 후 '금융정보활용입력' 누르셨나요?
  - 금융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눌러 재산내역을 확인한 후에 일괄 저장 버튼을 눌러야만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예금·보험, 증권, 채무, 가상자산 항목에서 **각각** 진행하여야 합니다

- 채권(회사채,금융채 등), 비상장주식 입력 하셨나요?
  - 금융정보제공으로 보여지더라도, 일괄반영 및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서 항목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을 신고하셨나요?
  - 가상자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수량이 있으면 소수점 이하 8째자리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이외 재산도 정확하게 신고하셨나요?
  - 공직자윤리법 상 모든 등록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셨나요?
  - 제공된 금융·부동산 등의 정보는 단순 참고자료이며,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과 친족의 보유 재산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산 신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003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제2장

013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015 ★ 재산신고 실수유형 TOP 10
016 1 본인정보 입력
016 2 친족정보 입력
020 3 총괄표 작성

1. 부동산(토지,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3. 현금(수표 포함)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7. 채권(사인간 채권)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11. 회원권
12. 지식재산권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15. 가상자산

목 차

053 4 변동요약서 작성

054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만 해당)

055 6 신고서 제출

제 3 장

062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063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1-2. 로그인 후 사전 확인 사항

066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2-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2-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072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PETI 메뉴 주요기능

3-2. 신고서 작성화면

3-3. 본인정보 입력

3-4. 친족 정보 입력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3-6. 변동요약서 작성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137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139 5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대상자 등)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 1 장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제 1 장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정기 재산변동신고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제6조)

신고기준일 : '24.12.31.

- 모든 재산항목은 '24.12.31. **현재 시점**으로 작성해야 함
  ※ 신고서 작성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등록대상 친족 및 재산

본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본인의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재산
※ **등록대상이 아닌 자** :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양부모,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지상권·전세권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보험 포함),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사인간 채권), 채무(금융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 가상자산(가상자산예치금 포함)
- 그 밖에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출자지분, 지식재산권 등

신고 기간 : '25.1.1.(수) ~ 2.28.(금) 24:00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부동산정보는 '25.1.15.부터, 금융정보는 '25.1.24.(회신정보 열람·검증 1.15.~20.)부터 제공

재산신고 방법 :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한 온라인 신고

- https://www.peti.go.kr,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 휴대폰과 주민번호가 등록된 경우 SMS인증(주민번호 발급일자 포함)을 통한 로그인 가능

재산심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사항을 심사하여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

유의사항

- (신고기준일) 반드시 **'24.12.31.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일('25.1월~2월) 당시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신고대상 재산) 실제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 재산이 아니더라도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명의로 된 재산** 또는 **사실상 소유 재산** 모두 신고
  - 예금, 증권 및 채무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재건축 분양권, 가족사이의 사인간 채권·채무 등도 모두 신고
  - 해외에 있는 재산(예금, 부동산 등)도 빠짐없이 모두 신고
  - **공개대상자**는 특정재산항목*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23.12.14.부터 재산등록항목에 가상자산 추가)
    * ① 부동산 ② 비상장주식 ③ 사인간 채권·채무 ④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⑤ 주식매수선택권 ⑥ 가상자산
  - **부동산·가상자산 업무 관련 등록의무자**의 경우 **비공개 대상자도** 부동산 및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
- (정보제공 및 활용) 등록의무자 편의를 위해 등록대상 친족의 서명을 받아 '24.12.2.까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부동산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본인 및 친족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동의서는 철회 전까지 계속해서 유효함
- (신고유의사항 확인) **전년도 재산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유의사항 팝업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신고

기타 관련제도

- (고지거부) **직계존비속 중 독립생계·타인부양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해당 재산을 고지거부 할 수 있음

구분	신규허가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 최초 고지거부 신청자 • 기존에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되었거나 허가기간 만료된 자	•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22.12.31.기준일) 당시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2022년 연중에 최초등록(재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 신규 허가 받은 대상자 •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21.12.31기준일) 당시 고지거부 재심사 허가 받은 대상자
신청 기간	• '25. 1. 1. ~ 1. 31. 까지 * 신고기간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25. 1. 1.~ 3. 31. 까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24.6.27.)에 따라 1개월 연장(2월말 → 3월말)

※ '24년 고지거부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는 신규 신청 가능(신청 기한 1.31.까지)

- (주식백지신탁)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함

※ 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하여 '관련없음' 결정받은 경우는 보유 가능

참고 1

고지거부 심사기준

고지거부 심사기준

대 상		심 사 기 준
직계존속	독립생계	•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타인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소득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 **(타인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직계존속이 타인으로부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을 이전 받으면 허가
직계비속	독립생계	•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타인부양	•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미성년 자녀는 이혼한 배우자나 양부모 등 자녀를 부양하는 타인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2024년	1,336	2,209	2,828	3,437	4,017	4,570	5,108
	2025년	1,435	2,359	3,015	3,658	4,264	4,838	5,392
농촌지역	2024년	921	1,524	1,951	2,371	2,771	3,153	3,524
	2025년	975	1,604	2,050	2,487	2,899	3,289	3,666

※ 8인 이상 가구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도시] 1인 증가시마다 554천원씩 증가
[농촌] 1인 증가시마다 377천원씩 증가
* '24년 1인가구 (도시) 1,336천원, (농촌) 921천원 // 8인가구 (도시) 5,646천원, (농촌) 3,895천원

※ **고지거부 신규 신청자**는 **2024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재심사 신청자는 2025년 소득기준을 적용**
* 주소지가 '읍, 면'이면 농촌, 그 외 도시지역 기준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10.0ha 미만	10.0ha 이상
단위환산 (ha→㎡)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미만	1만5천~2만㎡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10만㎡ 미만	10만㎡ 이상
월 소득	2024년	185	586	957	1,242	892	2,181	1,455	2,583	5,641
	2025년	114	734	1,150	1,944	1,846*	1,876	3,313	4,466	3,885*

* 소득 역전 구간 발생

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예시)

일반소득	※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농지대장, 출하증명(공제내역 기재)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수령기간, 월 수령 금액 기재) 등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득금액 증빙서류 • 소득금액 증빙서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월세이체내역) 등
재산소득	※ 직계존속만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준일 현재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기준일 현재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등
기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 등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 신청 - 본인사유서, 형제·친척의 진술(인우증명), 사실관계 증빙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

※ 민원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대장 등) 발급 : 정부24(www.gov.kr)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 국세청 기준시가 확인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CD금리(CD수익률) 확인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탈(freesis.kofia.or.kr)

고지거부 신청 유의사항 및 자주하는 질문

구분	유의사항 및 질문	답 변
유의사항	① 고지거부 신청기간 준수	• 고지거부 허가 신청은 1.1.~1.31., 재심사 신청은 1.1.~3.31.기간 중 가능하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함
	②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서류 누락	•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고지거부 신청서와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내 미제출시 반려처리되거나 소득기준 불충족으로 불허될 수 있음
	③ 고지거부 신청서 서명 누락	• 고지거부 신청서에는 등록의무자와 고지거부 대상자의 서명(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누락되거나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것으로 대신하여 잘못 서명하는 경우 반려처리될 수 있음
	④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여부	• 고지거부를 신청한 후 고지거부가 허가될 것으로 보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될 경우 정보제공 없이 재산등록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필요
자주하는 질문	⑤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매출내역 등을 소득금액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한지 여부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서, 카드사를 통한 수입증명 등은 소득증빙자료가 아니므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
	⑥ 소득기간/자녀 독립세대 구성 기간	• 고지거부 신청시에는 소득(재직)기간 및 자녀의 경우 별도세대 구성기간이 신고기준일 이전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
	⑦ 임대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재산환산소득 산정 가능 여부	• 직계존속의 부동산 재산의 소득환산시 동일건물에 대한 재산소득과 임대소득은 중복하여 합산이 불가하며, 고지거부 대상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재산소득으로 불인정함
	⑧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종합과세 구분별) 소득금액 확인 방법	•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닌 소득금액을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단, 연말정산한 사업자의 경우 지급받은 총액을 인정) •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수입금액을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참고 2 주식백지신탁 제도

○ 주요내용

- (제도개요)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게 하여 공무집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예외적으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보유 가능

- (대상자)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 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주식으로 고시한 주식(펀드, 해외주식 등)은 보유 가능하므로 3천만원 초과 여부 산정시 제외

- (신고기준일) 아래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백지신탁 또는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 조치

  ◈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 및 제2항)**가 소멸된 날**
  ◈ **공개대상자 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예: 행안위 소속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 **기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등**

- (의무위반시 제재) 기준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

○ 운영절차

원 칙	매각·백지신탁	➡	재산등록기관에 신고	➡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예 외	직위변경 신청	➡	직위변경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주식 보유 가능				

※ 백지신탁 계약체결 후 처음 신탁주식의 처분 완료 시까지,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후 관련성 없음 결정 시까지, 의무 이행이 지연된 경우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함(법 제14조의11)

제 2 장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 재산신고 실수유형 TOP 10

1. 본인정보 입력
2. 친족정보 입력
3. 총괄표 작성
4. 변동요약서 작성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만 해당)
6. 신고서 제출

제 2 장

정기 재산변동신고 방법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1 본인정보 입력	- 소속, 직급, 직위, 주소, 연락처 등	• 신고기준일('24.12.31.) 현재 상태로 수정
2 친족정보 입력	- 친족의 신상정보, 고지거부, 등록대상, 직업, 거주형태 등	• 신고기준일 현재 친족정보 작성 ※ 혼인(신고)한 딸, 사망한 직계존비속,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등록제외
3 총괄표 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취득가격, 보상액)으로 신고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② 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 타인건물에 대한 임차권(전세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참고, 임차보증금 기입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등	•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으로 등록
	- 광업권·어업권 등	•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 현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예금(보험 포함)·유가증권·사인간 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이면 '예금' 항목에, '-'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투자신탁수익증권(펀드, ETF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가족 간의 채권·채무(대여)도 빠짐없이 신고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3 총괄표 작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정치자금용 예금계좌의 예금은 정치자금용 예금 계좌에 신고 ※ 위 '예금' 항목에 중복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모두 신고 ※ 골프회원권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등록, 둘 중 하나만 확인 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 등록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하고 '비고' 란에 면적 기재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 신고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 기재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등) 등 기재
	- 가상자산	•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 기재
4 변동 요약서 작성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 소득과 본인 외 소득자 수 및 (세전)소득금액 기재
5 공개목록 작성	- 재산공개자만 작성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에 주의 • 토지인 경우 지목(임야, 답 등)과 지번을 기재 • 건물인 경우 종류 및 용도(주택, 아파트, 상가 등)만 기재하고 지번과 동·호수 기재 생략
6 신고서 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가장 많이 하기 쉬운 실수 TOP10

❶ 거주지의 전세(임차)권 미신고
⇒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 등의 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❷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 임대채무 미신고
⇒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한 경우, 보증금 등을 반드시 임대채무로 신고해야 함

❸ 주식 외 수익증권(ETF, 펀드 등) 항목 잘못 신고
⇒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항목으로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여야 함

❹ 자동차 지분 미신고
⇒ 단 1%를 가지고 있더라도 반드시 지분별로 신고하여야 함

❺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 채권·채무 한쪽만 신고
⇒ 가족간의 채권·채무의 경우 의무자별로 각각 모두 신고하여야 함

❻ 매도 중인 토지·건물의 매매대금(중도금, 잔금 등)을 미신고
⇒ 매도 중인 토지·건물의 매매대금은 등록기준일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사인간 채무로 신고하여야 함

❼ 가상자산 보유 미신고
⇒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소 내 예치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하여야 함
※ 단, 가상자산예치금(가상자산 구입 등을 위해 거래소 등에 예치한 금액)은 반드시 '예금'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❽ 채권·비상장주식 신고누락
⇒ 금융정보 일괄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

❾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다수 세대 건물을 보유시 보증금 합산 입력
⇒ 거주자별 또는 계약자별로 각각 따로 보증금 등의 임대채무 금액을 입력하여야 함

❿ 기존 보유한 분양권을 아파트 입주 후에도 분양권으로 계속 신고
⇒ 잔금 지급 후 입주가 완료된 경우 등기 이전이라도 반드시 '소유권'으로 신고하여야 함

1 본인정보 입력

등록의무자의 소속, 직위, 직급, 주소,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4.12.31.) 현재**의 상태로 수정

- **(소속)** 전입·전출 등으로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소속을 변경
- **(주소)** 자택 및 직장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신고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2 친족정보 입력

친족(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주소, 직업, 연락처 등을 **신고기준일('24.12.31.) 현재**의 상태로 입력

- **(주소 및 직업)** 친족의 주소 및 직업은 재산의 증감액과 함께 재산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상세하게 입력하여 향후 불필요한 소명 방지
- **(주소지에 대한 거주형태)** 자가, 전세, 기숙사, 친척집 등을 선택
  - 특히, 해외 거주 친족의 자가, 기숙사, 렌탈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주지 정보를 수정하고 부동산 등록 시에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친족의 범위) 배우자와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친족은 혈족개념이 적용되며, 배우자(고지거부 불가능)의 재산은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등록
  - 결혼식을 한 사실혼 배우자 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임
  - 자녀(장녀, 장남 등)와 손자녀(손자, 손녀)는 출생순으로 등록·신고
  - 조부모가 있는 경우 등록 제외되지 않도록 하되, 혼인(법률혼)한 딸은 자녀 순서는 유지하되 등록에서는 제외
  - 장녀(차녀)·장남(차남)의 용어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신고

자녀 신고방법(예시)

❶ '92년생 딸(장녀),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 '98년생 딸(삼녀)이 있는 경우 ⇒ 장녀 – 장남 – 차녀 – 삼녀(자동 순서 정렬 가능)

❷ '92년생 딸**(장녀, 혼인)**, '94년생 아들(장남), '97년생 딸(차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녀(혼인한 장녀는 등록에서 제외)

❸ '05년생 아들(장남), '08년생 아들(차남), '09년생 딸(장녀)이 있는 경우
⇒ 장남 – 차남 – 장녀 / 장남 – 장녀 – 차남(자동 순서 정렬 가능)

- **(등록제외)** 친족 중 **사망**한 사람, **혼인(법률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는 등록에서 제외
  - 사망한 친족의 재산은 신고기준일까지 상속(등기이전 등)이 안 된 경우에도 법정 상속 지분만큼 신고
  - 혼인(법률혼)한 딸이 이혼하게 되면 친족으로 다시 등록(외손자녀는 등록하지 않음)
  - 기존 시(조)부모를 등록하였던 경우, 친(조)부모를 등록하여야 하며 기존 등록하였던 시(조)부모는 등록제외
- **(고지거부 확인)** 친족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상태, **고지거부 상태**(허가기간, 허가여부)를 **서로 비교·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친족의 재산은 반드시 신고
  - 기존에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친족은 등록상태에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으며,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만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가능

주요 실수 사례

▌친족재산 누락

① 배우자 재산 누락
- 배우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함
  - ☞ **이 경우에도 정보제공 동의 혹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함**

② 직계존비속 재산 누락
- 이전에 받은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부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음(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몰랐음)
  - ☞ **친족정보 입력 시 부모의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고지거부 허가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재산을 신고해야 함**

③ 문중재산, 동창회비 등 누락
- 형제 등 공동명의의 '문중재산', 본인 명의의 '친목(동창)회비' 등 예금계좌를 실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 누락함
  - ☞ **실제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은 신고해야 하며, 회비, 문중재산 등은 변동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함**

▌친족(자녀 등) 등록 오류

① 혼인(법률혼)한 딸 등록
- 기존 등록대상자였던 딸이 혼인하였으나 친족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니므로 등록제외해야 함**

② 이혼한 딸 미등록

- 장녀가 '15년도 결혼, '20년 이혼하였지만 자녀의 정보를 변경없이 그대로 신고함(장녀를 등록제외)
  - ☞ **혼인(법률혼)한 딸은 등록제외 대상이지만 이혼한 딸은 등록대상에 해당함**

③ 자녀 등록 오류

- 자녀가 2남 1녀('95년생 아들, '00년생 딸, '02년생 아들)인 경우 출생순으로 장남, 차녀, 삼남으로 신고함
  - ☞ **자녀의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순서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장남, 장녀, 차남으로 신고해야 함**
- 1남 2녀('90년생 딸, '92년생 딸, '98년생 아들) 중 장녀가 혼인하여 등록제외하고 자녀를 장녀, 장남으로 신고함
  - ☞ **혼인(법률혼)한 딸(장녀)은 등록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자녀 순서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차녀, 장남으로 신고해야 함**

④ 조부모 미등록

- 조부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상호 왕래가 거의 없어 신고하지 않음
  - ☞ **실질적인 부양여부 등에 관계없이 직계 존속은 등록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함**

Q&A 본인 및 친족정보 관련

Q 1. 재산의 신고기준일 및 신고기한은?

A
- 모든 재산은 '24.12.31. 기준으로 '25.2.28. 까지 신고해야 함
- 신고서 작성일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Q 2.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대상의 범위는?

A
-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함
- 혼인(법률혼)한 딸, 외조부모, 외손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계부모(새아버지, 새어머니), 계자녀 등은 등록대상 아님

Q 3.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한쪽에만 신고해도 되는지?

A
- 부부가 모두 재산등록의무자인 경우에도, 각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함

Q 4. 본인의 친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친자녀의 재산을 등록해야하는지?

A
- 자녀의 양육 주체에 관계없이 친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재산을 등록해야함

Q 5. 어린 손자녀의 경우, 재산이 없어도 등록을 해야 하는지?

A
- 재산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 비속은 모두 등록대상 이므로 손자녀에 대해 별도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출생부터 친족으로 추가하여 신고해야 함

3 총괄표 작성

유의사항

■ **금융 및 부동산 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 입력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 후 신고 필요**

제공되는 정보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함)		제공되지 않는 정보	
토지	등기된 소유권	토지	지상권
건물	등기된 소유권	건물	전세(임차)권, 분양권
자동차	등록된 소유권	자동차	리스 또는 렌탈 차량
금융 자산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증권(상장주식, 회사채, 금융채)	금융 자산	현금, 증권(비상장주식) 등
채무	금융채무	채무	건물임대채무, 사인간 채무
회원권	등기된 회원권	회원권	-
가상 자산	수량,가액,가상자산예치금 등	가상 자산	-

■ **제공된 정보의 일괄입력(활용입력) 가능여부**

- **금융(보험, 수익증권 등) : 일괄입력 가능** * **비상장주식·회사채·금융채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부동산(토지, 건물) : 일괄입력 불가능(해당 주소 클릭 후 개별 입력 필요)**

☞ **제공된 정보를 열람만 하고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

1.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임차)권**의 권리자(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명세**와 **가액**을 신고

공개대상자 및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비공개자 포함)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 소유권

- (소유권 판단)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신고
  - **매입 부동산** :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등기가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자금출처 등 사실관계 기재
  - **매도 부동산** : 매수인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소유권으로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수령금액 등 사실관계 기재
    ※ 부동산 매도 완료(등기 이전 완료) 전 받은 중도금·잔금 등 금액은 사인간 채무로 신고
  - **등기 이전이 안 된 상속 받은 부동산** :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사실관계 기재
  - **미등기 부동산** :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제공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와 대법원 등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누락 신고되지 않도록 유의
- (면적신고 방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분리하여 신고(예 대지 ○○㎡, 건물 ○○㎡)
  - **아파트** : 건물면적(전용면적)만 기재하고 대지면적은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상가, 빌딩, 오피스텔** :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은 전체면적(전용+공용면적)을 기재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 신고(예 ○○㎡ 중 ○○㎡)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어 보여지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관리형태 기재) 소유권으로 신고한 건물은 '변동사유' 란에 반드시 관리형태를 기재
  예 등록의무자의 주소지, ○○○에게 임대, 공실(빈집)로 관리 등
  - **유상임대한 부동산** :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을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임대보증금은 '채무' 항목에 재산의 종류를 '건물임대채무' 또는 '토지임대채무'로 신고
  - **미등기 부동산** :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기재
-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부동산**과 **종전에 신고한 부동산**을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한 부동산** : 반드시 실거래가격*(**실제매입·매도한 금액**)으로 신고하되,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24년도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평가액으로 신고(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활용)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내용 기재
    * 각종 포털 및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닌, **실제로 취득한 가격** 또는 **보상액**을 의미

- **기존 신고한 부동산** :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실거래가격과 평가액(공시지가, 공시가격 등)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신고 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은 '24년도 평가액으로 신고
- **공동소유 부동산** : 소유 지분만큼만 신고

용어정리

- **가 액**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부동산의 가치로, 평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의미함(전체 재산 총계에 반영되는 금액)
- **평 가 액**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상 공시지가·공시가격 및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
- **실거래가격** : 실제 거래(매도·매입) 금액
  ※ KB시세 등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가 아님

부동산 평가액 산정방법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다가구주택		
• 아파트	공동주택공시가격 (토지+건물 포함)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공시가격이 있는 일부 상가·빌딩· 오피스텔 (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국세청 기준시가 (토지+건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준시가조회]→ [상업]→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주소 검색]

유형	평가액	확인방법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또는 건물만 보유한 경우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 공시가격이 없는 건물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경우)	개별공시지가 + 지방세 시가표준액 (건물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 〉** •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 지방세 시가표준액 〉** •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 소재)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 외 소재)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

2) 전세(임차)권

- (신고대상)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토지** 등

  ※ 전세(임차)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전세(임차)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필요

- (가액산정 및 작성방법)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을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 **월세 부동산**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등록재산이 아님
  - **공무원·군인 임대아파트, 관사 등** :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을 전세(임차)권 항목으로 신고

3) 분양권(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 (일반 분양아파트)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금액**을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비고란에는 총 분양가액을 기재
  - 다만,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재건축 분양아파트) **동·호수 배정 이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계속 신고**하되,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에는 **기존 건물은 '소유권 상실' 처리**한 다음 **권리가액(=보상가액)과 부담금 등의 총 납입금액**을 '건물'항목에 **분양권**으로 신고하고, **이주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채무' 항목**에 신고

  ※ 분양권을 매입(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매도)가격으로 가액 신고

  ※ 분양권은 부동산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의무자가 본인 및 친족의 분양권을 정확히 파악하여 빠짐없이 신고

▌재건축 분양권 관련 용어(예시)

(단위: 천원)

권리가액	부담금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340,000	40,000	380,000	480,000

① **권리가액**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 개발이익(비례율) (=보상가액, 지분금액, 자산가치)
② **부담금** : 착공 시 건설사에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③ **조합원 분양가** : 재건축 아파트 원소유자가 분양받을 경우 부담하는 금액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추가 보상금 발생, 권리가액 〈 조합원 분양가 : 부담금 발생)
④ **이주비용** : 완공 때까지 조합원의 생활유지 등을 위해 빌려주는 자금

4) 기타

- (주택연금과 관련한 담보 주택) **'부동산 소유권'**으로 계속해서 신고하되,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은 '채무'**항목에 별도 신고

  ※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 (신축 중인 건물) **'사실상 소유권'**으로 신고하되, **가액**은 신고기준일 시점까지 **소요된 건축비**로 신고(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경우 함께 신고 필요)

주요 실수 사례

▌부동산(토지 및 건물) 누락

①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해당항목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부동산 및 금융정보는 등록의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입력해야 함**

② 건물은 소유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전세(임차)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누락)

☞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임차)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특히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임차)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니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③ 시골에 있는 부모님 소유 무허가건물을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 누락함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함**

※ 정보제공동의자의 경우, 무허가 건물도 행안부 과세 자료로 확인 가능

④ 소유자가 동일한 건물과 토지를 토지와 건물에 분리하여 각각 신고하거나 건물은 누락하고 토지만 토지항목에만 신고함

☞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항목에 토지면적, 건물면적을 각각 신고하고, 가액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하여 신고해야 함**

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분양권 가액을 계약금 금액으로 신고함

☞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납입한 금액을 분양권 가액으로 신고해야 함**

⑥ 부모사망으로 형제 등과의 상속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해당 재산을 누락함

☞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을 신고해야 함**

Q&A 부동산(토지, 건물) 항목 신고 관련

Q 1. 부동산 가액 신고방법은?

A

- (신규취득) 실거래가격(실제 취득한 가격, 보상액)으로 신고 하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액으로 신고
- (계속보유) ① 종전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 신고, ② 종전신고 시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액의 변동을 확인하여 신고

Q 2. 동일한 주소지 건물에 대해 부동산 정보가 2개 조회되는데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

A

- 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부동산 정보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대법원, 행정안전부 등)별로 회신되므로 동일한 주소지 건물이 중복으로 조회될 수 있음 신고기준일(등록기준일) 현재 소유여부를 확인하시어 소유가 맞다면 정확하게 하나만 신고

Q 3. 건물은 소유권만 등록(신고)하면 되나요?

A

- 부동산의 소유권 뿐만 아니라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의 전세권, 건물임대채무, 분양권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소유권 외 건물임대채무, 전세권, 분양권 등은 부동산 및 금융정보가 조회되지 않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직접 확인 후 신고해야 함

Q 4.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며, 이사 갈 주택을 매수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주고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한 경우, 등기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본인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 매도계약을 체결해 받은 계약금, 중도금 등은 사인간 채무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 또한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현재 상황(계약관계, 금액 등)을 기재하면 됨

Q 5.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재산신고 방법은?

A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는 토지 항목에 건물은 건물 항목에 별도로 신고함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건물 항목에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함

Q 6. 등기사항증명서상 부동산의 명의인이나 실제 타인 재산(예:문중재산)인 경우?

A

- 해당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고 실제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Q 7. 직계존속 사망 등으로 상속될 부동산이나 명의 이전이 안 된 경우 신고방법은?

A

- 상속의 경우 사망 시점에 소유권이 당연히 이전되므로, 상속받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등기가 정리되기 전까지는 법정 상속지분 또는 협의된 지분을 소유권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 기재

Q 8. 공동명의 부동산 신고방법은?

A

- 공동명의 소유 부동산인 경우 재산등록대상자가 각각 소유한 지분만큼 면적 및 가액 등을 신고해야 함

※ (예시) 본인 건물 100㎡ 중 50㎡, 배우자 건물 100㎡ 중 50㎡

Q 9.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 동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전세보증금을 끼고 구매한 경우, 재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공동명의인 아파트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해당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본인과 배우자 각각 소유 지분만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 예) 전세보증금 8억원이 있는 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배우자 명의로 지분만큼 각각 신고(각각 5억원)하고 전세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지분만큼 각각(각각 4억원) 신고

Q 10. 등록의무자 본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어떻게 등록(신고)해야 하는지?

A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소유지분만큼의 면적과 가액을 신고해야 함. 이때 공동 소유한 사람이 재산등록대상자인 경우(ex. 배우자) 에는 해당 소유자의 지분도 신고해야 하나, 재산등록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인 본인의 보유지분만 신고해야 함

Q 11. 건물 임대(빌려줌) 또는 임차(빌림) 시 재산신고 방법은?

A

- **(임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건물 항목에 입력, 임대 후 받은 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함
- **(임차)** 건물에 대한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입력, 이때 지불한 임차 보증금을 재산 가액으로 신고함

Q 12. 건물 임차 시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고 월세를 매달 지급하는 이른바 '반전세'의 경우 재산 신고방법은?

A

- 건물 항목에 전세(임차)권으로 보증금만 별도로 신고함
  ※ (예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원룸 임차
  ⇒ 보증금 1천만원만 전세(임차)권으로 신고, '변동사유' 란에 월세금을 기재
-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는 경우 신고대상 아님

Q 13. 신고기준일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신고기준일 이후 잔금을 지급한 경우 어떻게 등록(신고)하여야 하는지?

A

- 모든 신고재산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기준일까지 계약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전세(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음. 다만, 계약금 지불로 인해 예금이 감소한 경우 예금 항목의 증감사유 부분에 해당내용을 기재 (계약금을 타인에게 차용한 경우라면 사인간채무 항목에 해당 금액을 신고하여야 함)

Q 14. 기존 신고시 '건물 임차권'을 '토지 임차권'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데 수정 방법은?

A

- 기존 신고시 재산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토지항목에 있는 해당 건을 '소유권 상실' 처리한 후 건물항목에 다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을 상세히 기재

Q 15. 신고한 전세집 계약만기 전에 새로운 주택 임차계약을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신고기준일 현재 기존 신고한 전세(임차)권의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 기존 전세권 가액을 변경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을 기재

※ 예) 전세보증금 3억원중 1억원을 돌려받은 경우 : 전세권가액을 2억원으로 변경하고 변동사유에 해당상황 기재

Q 16.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 분양권의 신고방법은?

A

- **(계약금만 납부한 경우)** 신고대상 아님
-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 건물 항목(분양권)에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분을 합산하여 가액으로 신고하고 총분양가액을 별도로 기재

Q 17. 분양받은 아파트의 옵션비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A

- 아파트 분양가 기재시 옵션금액이 있다면 포함하여 기재하고 '변동사유'란에 총 분양가액과 옵션가액을 상세히 기재

Q 18. 재개발 분양권을 신규로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주소지가 검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건설중인 아파트 등 주소지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주소창 옆 '기타(국외 등)'를 선택하여 직접 해당 주소를 입력하고 이후 완공되면 정확한 주소로 변경('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 기재)

Q 19. 기존 신고한 분양권을 잔금까지 완납하고 확정 지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기존 신고한 분양권을 잔금까지 납부 완료한 경우에는 권리종류를 '분양권'에서 '소유권'으로 변경하여야 함
  기존 분양권으로 신고한 항목의 좌측 하단에 '소유권 전환' 버튼을 클릭하여 소유권으로 변경할 수 있음

Q 20. 프리미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한 금액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총 분양가액과 프리미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 기재)

2.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권리종류, 제작연도, 배기량, 등록번호 등 **권리 명세**와 **가액**을 신고

1)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 (자동차 가액산정방법) 신고기준일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 차량기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순으로 등록
  ※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경우 자동차 가액 신고 후 할부 잔액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배기량이 없는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등)의 경우 배기량에 0cc기재, 자동차 가액은 구입시 보조금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 기재

▌리스자동차 신고방법

- **운용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법인 등에 반납 (≒렌터카)
  - 리스 보증금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
    ※ 장기렌터카는 보증금을 채권란에 신고하되, 렌터비·선납금은 신고하지 않음
- **금융리스** : 리스 계약 종료 후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 (≒할부구매)
  - 리스차량의 보험기준 가액은 채권란에, 리스 잔여대금(월납부액×잔여기간)은 채무(금융채무)란에 신고하되, 채권의 '변동사유'란에 리스 관련 사실관계 기재
    ※ 잔여대금을 모두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자동차 항목으로 변경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가액산정방법)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등록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주요 실수 사례

▌자동차 누락 및 과다 신고

① 배우자와 공동소유(본인99%,배우자1%)인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신고하지 않고 의무자 본인 지분 100%로 신고함
   ☞ **자동차 등록원부 상 공동소유일 경우, 대상자별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해야 함 (의무자 99%, 배우자 1%)**
② 제공된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금액 누락
   ☞ **자동차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액을 제외한 차량 소유정보만이 제공되며, 차량가액(자동차 보험 상 기준가액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등

- (권리의 명세)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
- (가액산정방법) 신규 취득한 경우와 종전에 신고한 경우를 구분하여 신고
  - 신규 취득 :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상황 기재
  - 종전 신고 : ① 종전 신고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격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 ② 종전 신고시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최근 평가액으로 신고

3. 현금(수표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고기준) 보유하고 있는 **지폐 및 자기앞수표**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당좌수표 등 일반 수표는 '채권', '채무' 항목에 신고)

  ※ 보관방법(금고, 옷장 등), 보관사유, 용도, 자금출처 등 기재

주요 실수 사례

▌현금 누락 및 과다 신고

①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사용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 현금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

②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전액 예금하였으나 전년도와 변동없이 그대로 신고함

☞ **보유현금을 예금한 경우, 기존 신고가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중복(과다)신고가 되므로 기존 현금항목은 삭제하고 은행에 예치한 금액만큼 예금항목을 증액신고해야 함**

③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함

☞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 신고해야 함**

4. 예금(보험, 수익증권, 개인연금 등 포함)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예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보유액 등을 신고

- (소유자 판단)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본인 명의의 동창회비**(친목회비), **문중재산** 등도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반드시 예금주 기준**으로 **등록** 후 '특기사항' 란에 사실관계 기재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별도 항목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예금' 항목에 해당 예금계좌를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예금의 종류)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은 신고 제외), **수익증권**(펀드, ETF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파생상품 위탁증거금 포함)도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예금**에 포함
  ※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해외계좌, 기타 금융권 계좌, 봉급에서 자동 이체되는 **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도 '예금' 항목에 반드시 신고
  ※ 보험약관대출은 '채무' 항목에 신고
- (보험) **100% 보장성 보험**(적립보험료가 0원인 보험, 예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을 **계약자 명의**로 신고하고, **가액**은 **납입 보험료 총액**으로 신고
  ※ 지급개시되어 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가액은 납입금액 총액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해당 상황을 기재하여야 함
  (예시) 총 납입금액 3,000만원, 2022.1월부터 월50만원씩 수령 중
  ※ 예상 해지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금) **개인이 가입한 연금은 모두 등록대상**이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은 **등록대상 재산 아님**
  ※ 퇴직연금(IRP 등)의 경우, 계약자가 납입한 총액으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 신고기준일 잔액이 ⊞면 '예금', ⊟면 '채무' 항목에 신고
  ※ 마이너스 통장 총액 한도가 아닌 사용금액, 잔액을 확인하여 신고
- (펀드 등 수익증권) 신고기준일 현재의 예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신고
- (가상자산예치금) 신고기준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 내 가상자산예치금으로 신고
  ※ 가상자산예치금은 가상자산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종류'란에 '펀드명', '특기사항'란에 '사모펀드유형'(예 :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을 기재

◆ 계좌번호가 없는 사모펀드의 경우 '계좌번호'란에 '-' 기재

- (부동산 신탁재산)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인 경우에는 '건물' 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5.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을 신고

- (예금의 종류) 일반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예금, 정기예금, CD, 보험, 수익증권(펀드, ETF 등), 투자자예탁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
- (보유액 산정 및 신고방법) 신고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등록하고, '변동사유' 란에 증감 사유를 기재

※ 정치자금법 상 예금계좌의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계좌 개설기관(은행)에 확인

주요 실수 사례

▌예금 중복신고

- 금융정보동의로 해당 계좌가 예금항목으로 제공 되었으나,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정치자금법상 예금계좌 항목에 추가로 계좌를 입력하여 중복·과다신고

☞ **정치자금법 상 예금계좌의 경우, 금융정보동의로 회신된 일반 예금 항목에서 해당 계좌를 삭제 후 정치자금법에 따른 예금계좌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6. 증권(주식·국공채·회사채·백지신탁 등)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 **비상장주식·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 등은 직접 입력 필요**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증권의 종류(주식, 국채 등), 발행인(종목명), 종목코드(상장주식의 경우 반드시 기재), 수량, 가액 등을 신고

- **(증권의 종류)** 주식(국내·외 상장주식, 국내·외 비상장주식),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모두 등록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은 상장주식만 적용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채권 등은 직접 입력 필요**

- 종전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번 신고 시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

※ 주식백지신탁 또는 매각 대상은 등록의무자가 공개대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임 (재산신고 금액기준과 주식백지신탁 금액기준이 다름)

* (공개대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증권회사가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랩 상품 등) 신고기준일 현재 개별주식을 신고('비고'란에 '랩상품' 표시)

※ 예금항목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유가증권)**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액면가'로 신고**
  - '액면가'를 알 수 없는 해외채권 등은 '매입가'로 신고하고 '특기사항'에 해당상황 기재
  - 발행어음의 경우 발행기관과 발행일자 등을 확인 후 '액면가'로 신고
- **(상장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격'**으로 신고
- **(비상장주식)**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래량 가중 평균가'**로 등록하고, **기타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등록
  - 상장폐지, 폐업중인 법인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하여야 하며,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음
  - 상장폐지, 폐업 등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 소명자료(정보제공 요청일 및 방법, 거부사유 등)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할 수 있음

    * **한국장외시장(K-OTC)** : 종전 프리보드시장을 확대·개편한 시장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주뿐만 아니라 비상장 유명 대기업주도 거래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k-otc.or.kr)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량 가중 평균가' 확인 가능
- **(주식매수선택권)** 보유 중인 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 입력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 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 **(매각 또는 백지신탁)**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 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
-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공직윤리시스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출방법** :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첨부

주요 실수 사례

▌예금, 증권 누락

① 금융정보가 사전에 제공 되었으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입력되는 것으로 알고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누락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며, 제공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고해야 함**

② '예금'만 금융정보활용 입력을 하고 '증권', '금융채무'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아 누락됨

☞ **제공된 금융정보는 열람만 하면 자동 입력되지 않으며,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되 '예금', '증권', '금융채무' 각각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해야 함**

③ 금융채무, 소액 예금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누락함

☞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을 계좌별 1천만원 미만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를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④ 신고서 작성일 현재 금융채무를 변제하여 금융채무를 '0'으로 신고함

☞ **신고서 작성일 현재에는 변제하였지만, 신고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시점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⑤ 해약한 예금·보험 등을 현 가액만 '0'으로 신고함

☞ **예금·보험 등을 해약한 경우 '해약'에 체크(✔)하고 가액 적정여부('0'원)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고해야 함**

⑥ 증권항목에 '환매조건부 채권'이 회신되었으나, '금융정보 활용입력'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신고된 것으로 알고 누락함

☞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회신된 정보를 참고하여 직접 신고해야 함**

⑦ 재산신고서 작성 시점의 가상자산예치금 보유잔액을 신고함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예치금은 신고기준일에 발생한 거래까지 포함하여 해당일의 최종 잔액을 신고하여야 하므로(신고기준일 23:59:59 현재의 보유잔액). 신고서 작성 시점의 잔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

참고 3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방법

기본방향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진단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가액의 유형 결정

- (실거래가격)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평가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 (액면가) ① 실거래가격 또는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하는 경우 제외), ② 평가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 등록의무자와 이해관계자가 **동일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액**으로 신고

실거래가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① (거래시기) 재산등록 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매도 또는 매입)

※ 해당 기간 중 둘 이상의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매매를 말함

② (거래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단, 재산등록사항을 고지거부한 사람 제외)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매매거래

③ (거래규모) 매매한 주식의 총수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매매일 기준)의 1% 또는 매매한 주식의 합계액(액면가 기준)이 3억원 이상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액면가는 주식발행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④ (입증가능성) 매매로 인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국세 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함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등

- **다만,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신고**

평가액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계산하기 버튼을 활용하여 1주당 평가액 계산

- **실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다음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신고**

①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3/5) + (1주당 순자산가치 × 2/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4/5

③ 1주당 액면가

☞ **1주당 액면가, 자산총액, 부채총액,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 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① ÷ 이자율(10%)② ①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1주당 당기순이익*을 최근 사업연도 순으로 각각 3 : 2 : 1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각 사업연도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가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발행주식총수** ※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 * 신고기준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상 금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총수

- 해당 주식이 다음 ①~②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 신고
  ① 재산등록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해당사항 체크 후 자산총액, 부채총액, 발행주식총수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 단, 기업이 회계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
  *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 내역, 제출 거부사유 등 소명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최종가액유형	구비서류
실거래가	• 국세 과세신고자료(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평가액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액면가	•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관련 소명자료 •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참고 4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주요내용

- (목적) 공직자 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신고대상)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신고시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 (신고주식)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영 제5조의2제1항)

  ※ 주식시장 :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SM, K-OTC (단, 백지신탁계약 신고 주식 제외)
- (신고내용)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직계존·비속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주식 거래내역(영 제5조의2제2항)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의무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가능(법 제22조제2호)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 기간) '24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24.1.1.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24.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영 제5의2제3항)

※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주식변동사항신고]에서 파일 첨부

- (제출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 종료일인 '25.2.28.(금)까지 제출

7. 채권(사인간 채권)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고방법) 채무자명, 채무자 주소(전화번호), 채무자와의 관계 등 상세정보를 기입
  ※ **전세(임차)보증금**은 채권 항목이 아닌 **'부동산(건물)' 항목**에 기입
  ※ **사인간 채권·채무(부모-자녀간 포함)**는 비조회성 재산으로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산 항목이므로 차용증, 원금·이자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증빙자료 첨부 가능)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권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증 상 대여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활용**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 채무 등)를 신고

- (금융채무)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 채무**(대출, 약관대출, 미수금, 카드론 등)**은 '금융정보활용입력'** 기능을 이용해 신고하고, **채무의 사용처를 기재**
  예 등록의무자 본인이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의무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 카드를 이용한 현금서비스 및 할부 물품구입비는 금융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사인간 채무) 발생사유·일자, 채권자와의 관계, 사용처, 이자율 등을 상세하게 기재
  - (가족 간 채무)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사인간 채권·채무로 등록
    예 배우자가 2천만원 금융대출 후 자녀에게 빌려준 경우 : 배우자는 [금융채무] 2천만원, [사인간 채권] 2천만원 신고, 자녀는 [사인간 채무] 2천만원 신고
    ※ 전체 재산에 변동이 없어서 가족간 채권·채무를 신고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만 신고 (예: 부모만신고, 자녀는 누락) 하지 않도록 유의

공개대상자의 경우 사인간 채무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좌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건물임대채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월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선거를 위한 채무) 선거자금을 위해 다수의 사람과 설정한 채무(일명 '선거펀드')의 경우 채권자는 대표 1인 외 00명으로 입력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 기재
  예 [채권자] 김○○외 2,300명, [비고] 6.13. 지방선거 선거펀드

주요 실수 사례

▌채권, 채무 누락

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 등은 전체 재산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음

☞ **본인의 자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은 사인간 채권으로,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신고해야 함(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증빙자료 첨부

② 임대 중인 건물의 보증금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지하여 누락함

☞ **건물임대보증금, 전세보증금 등은 신고 대상이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함**

③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거주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부동산의 전세(임차)권을 건물 항목과 사인간 채권으로 중복 신고함

☞ **전세(임차)권은 채권이 아닌 건물항목의 전세(임차)권으로 신고해야 함**

④ 친족의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건물전세권이나 건물임대 채무를 주변 시세로 신고함

☞ **친족에게 무상으로 임차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관리형태에 대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됨**

Q&A 예금, 증권, 채무항목 신고 관련

Q 1.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는데, 그 의미는?

A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개개인별로 판단, 예금·증권·채무 각각의 항목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 사례 예시

1. 본인 예금 합계액 7백만원, 배우자 예금 합계액 3백만원인 경우 ⇒ 등록의무 없음
2. 본인 예금 합계액 3백만원, 본인 증권 합계액 7백만원 ⇒ 등록의무 없음
3. 자녀 1인의 예금(6개 계좌) 합계액 12백만원 ⇒ 등록대상임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인 예금, 증권, 금융채무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Q 2. 예금 등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A

- 예금, 증권, 채무 등 각각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대상 아님
- 다만, 1천만원 미만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나 실제 1천만원 이상 소유하여 처분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필요

Q 3. 예금계좌를 등록(신고)하려고 하는데 해당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 예탁기관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기타'로 검색하여 해당하는 기관을 선택하고 예탁기관명을 직접 입력

Q 4. 부동산 신탁재산의 등록(신고) 방법은?

A

- 신탁등기 이전까지는 '건물' 항목에 종전 부동산을 신고, 신탁등기 이후에는 종전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 처리하고 신탁회사의 평가금액을 '예금'(부동산 신탁회사 회신금액)항목으로 신고

Q 5. 소유한 부동산이 신탁회사로 등기 이전된 경우 등록(신고) 방법은?

A
- 부동산 신탁회사로 부동산 등기가 이전된 부동산은 건물항목에 신고하지 않고, 신탁회사에서 회신한 금액을 예금항목에 신고

Q 6. 실제 본인 재산은 아니나 사업 등 목적으로 본인 명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

A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등 재산은 실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변동사유' 란에 기재함

Q 7. ETF, ETN, MMF, ELS, IRP의 등록(신고) 방법은?

A
- 보통, 정기, 자유 등 모든 예적금, DB, DC, IRP 등 퇴직연금, ETF, ETN, MMF, FX 등은 예금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Q 8. 증권계좌의 예탁금 및 간접금융상품 신고방법은?

A
- 증권계좌의 예탁금은 증권 구매를 위한 예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권 항목이 아닌 예금 항목에 신고함
- 증권회사의 간접금융상품(MMF, ELS, 수익증권 등)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 가상자산예치금도 예금 항목에 신고함

Q 9.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상장주식을 매수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은 증권항목에 신고기준일 최종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Q 10. 해당 주식계좌에 미수금이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주식거래시 발생한 미수금은 채무항목에 금융채무로 신고

Q 11. 해외주식은 금융정보열람에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A
- 금융정보열람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재산등록 참고용 자료이며, 금융정보열람에 보이지 않는 해외주식이라도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하고, 가액은 신고기준일 현재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

Q 12. 오래전에 상장폐지된 주식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상장 폐지된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청산이나 파산되기 전까지는 신고해야 함
- 법인의 청산여부와 액면가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법인의 등기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기타비상장주식 신고방법에 따라 평가액 등으로 신고
- 참고로 법인등록번호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DART),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명으로 검색하여 확인

Q 13.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등록(신고) 방법은?

A

- 보유 중인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이며, 받을 주식의 종류, 행사조건, 현재시가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기간 등 조건, 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기재

Q 14.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어 증권항목에 신고하였는데 해당 금액이 총괄표 총액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오류인가요?

A

- 주식매수선택권은 신고기준일 현재 실현되지 않은 권리로 재산항목으로 신고는 하지만 총괄표의 총 재산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은 증권항목에 신고는 하되 총계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오류가 아님
- 참고로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액에 합산되지 않음

Q 15. 매각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신고 방법은?

A

-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고' 란에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금액을 입력하고, '변동사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기재

※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으로 처리하면 가액이 자동으로 '0'으로 바뀌고 다음 신고 시 표시되지 않으며, 그 신탁재산은 이후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됨

Q 16.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통한 예금, 증권, 금융채무의 신고방법은?

A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신고기준일 현재 본인이 소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현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아 이를 활용하여 신고 가능

Q 17. 실제 본인이 소유한 계좌의 잔액과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정보가 상이한 경우 신고방법은?

A
- 의무자가 직접 확인한 잔액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신고해야함

※ 금융기관이 회신해준 자료는 참고용으로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최종 책임은 등록의무자에게 있음

Q 18. 회신된 금융 정보 외 추가적인 금융재산을 소유 중인 경우 신고방법은?

A
- 금융정보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회신되고 있으므로 해외은행 등의 금융정보는 회신되지 않음
- 미회신 금융정보의 경우 등록의무자가 추가로 해당 재산을 등록해야함

Q 19. 보장성 보험도 신고대상인지?

A
- 적립보험료가 있는 모든 보험은 신고대상
- 자동차 보험 등 보장보험료만으로 구성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님

※ 신고제외 : 자동차 보험 등 '적립보험료 0원' 상품

Q 20. 등록의무자의 보험을 고지거부하고 있는 모친(어머니)이 계약한 경우 신고 방법은?

A
-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고지거부 대상자인 모친이 계약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Q 21. 마이너스 통장의 신고방법은?

A
- 신고기준일 현재 통장의 잔액이 (-) 인 경우 금융채무로 신고하고, (+) 인 경우 예금으로 신고함(한도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님)

Q 22.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함

Q 23. 채무(건물임대채무,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의 신고 대상은?

A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건물·토지 임대채무 등)를 신고하고, 채무액 변동 시 그 사유, 자금흐름 등을 반드시 기재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개별 품목 모두 신고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보석류에 부착되어 있는 금 및 백금은 보석류 항목에 신고
- **(미거래 시 가액산정)** 계속 보유 중인 경우(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신고기준일 현재 시장가격으로 가액을 산정하고 변동사항 신고

10.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품목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고, 골동품 및 예술품은 품명, 크기(cm), 작가, 제작연대 등 작품 세부정보를 기재

- **(종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골동품 및 예술품(도자기 · 회화 · 서예 · 공예 · 조각 · 칠기 등)을 모두 등록
- **(소유권 변동 시 가액산정)**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미거래 시 가액산정)** 신고기준일 현재 전문가 등의 평가액으로 가액을 산정
  ※ '변동사유'란에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회사 등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11. 회원권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모든 회원권을 신고

- **(신고대상)** 권당 가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골프· 헬스·콘도미니엄 등의 모든 회원권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면적 기재
- **(골프회원권)** 신규 매입한 경우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가액을 등록하되, 둘 중 어느 하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등록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 (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그 외 회원권)** 매입가격으로 신고하고, 매도한 경우 현재 가액을 '0원'으로 신고(☑ 매도) 후 '실거래가격' 란에 매도 가격을 기재

※ 매도 등 실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가액 유지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12. 지식재산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고

- **(신고방법)**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등록번호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명세 기재
- **(가액산정)** 지식재산권에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소득 원인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13.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금액에 관계없이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합명·합자·유한회사에 대한 출자가액, 출자지분, 연간 매출액 등의 정보를 신고

※「상법」상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에 대한 출자지분은 등록대상 아님

※ 사업을 위해 등록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채무 등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확인방법)** 투자한 회사의 종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 주식회사인 경우 증권 항목에 '주식'으로 신고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 '출자 지분'으로 신고

공개대상자의 경우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4.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금액에 관계없이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고방법)**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 법인의 내역(명칭, 소재지, 대표자 등),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 및 직무 등을 신고

  ※ 복지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납부한 **기부금 또는 펀드** 등은 **신고 대상 아님**

  ※ 교회나 종중 등 사단·재단의 소유이나 등록대상자의 명의된 재산의 경우, '해당 항목'에 신고하고, '변동사유' 란에 사실관계 기재

  - 이미 신고한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등이 변동된 경우 변동내역을 신고

- **(확인방법)** 「민법」 상 사단·재단법인과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신고

15. 가상자산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보유 수량이 있는 경우 신고

- **(가상자산의 종류)**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및 보유하는 가상자산 등을 모두 포함

- **(신고항목) 거래소명, 가상자산명, 심볼, 종목코드, 가격, 수량, 형성과정**

  - **거래소명은 국내·외 거래소의 정식 명칭을 기입하되,** 개인 간 교환이나 매매 시에는 '기타'로 기입하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 취득일자, 거래금액, 교환매물 등을 서술

    ※ 기업 이벤트, 에어드랍 등의 경우 '기타'로 기입 후 형성과정에 배분주체, 취득일자, 보유 경위 등을 서술

  - 가상자산명은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기입
  - 심볼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 심볼명을 기입하되, 심볼명이 없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표시하는 심볼명을 기입
  - 종목코드의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의 종목코드를 기입하되, 코드명이 없는 경우 999999를 입력
  - 가상자산 보유 수량은 소수점 단위(소수점이하 8째자리)까지 기입(예시 : 비트코인 0.01038975 BTC)

- (가액산정) 등록기준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
  ※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입력
  ※ 기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액(등록기준일)으로 신고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종시세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입력

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반드시 기재**

- **(취득일자)** 계약일, 구매일, 가상자산의 취득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 및 유형(매입·교환·대여·이전·스테이킹·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상대방(매입·교환·대여 등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간 채무 등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 (예치금) 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 등은 '예금' 항목으로 신고(가상자산 항목 아님)
  - 실명계좌와 연결된 '가상자산거래소 내 예치금'을 전액 신고

주요 실수 사례

▌가상자산

①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서 작성 또는 제출 시점의 보유 잔액으로 잘못 신고

☞ **재산신고는 신고기준일까지의 변동내역을 포함한 최종 보유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상자산(및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에도 신고기준일 당일의 거래내역까지 포함한 최종 잔액(기준일 23시59분59초 현재의 보유잔액)으로 신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거래소)가 발급한 잔고내역서 등을 통해 잔액 확인

② 원화환산 가치가 '0원'이거나 소액임을 사유로 신고 누락

☞ **가상자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 수량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므로, 원화로 환산된 가치가 작거나 없더라도 보유 수량을 모두 신고하여야 함.**

③ 기업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

☞ **거래소에서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스테이킹, 개인간 이전, 상속, 증여 등 취득경로를 불문하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모두 신고하여야 함.**

④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 신고 누락

☞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 등 보유방식을 불문하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은 모두 신고하여야 함.**

※ '해외 거래소, 개인지갑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보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Q&A 가상자산 신고 관련

Q 1.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중단(상장폐지)된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보유한 가상자산 종목이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되어 실제 거래가 어려운 경우에도 보유 수량이 있다면 신고대상 재산에 해당함.

Q 2. 모든 등록의무자가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A

- 가상자산거래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임.
- 거래내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거래내역서(고객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종목, 수량, 실거래액, 거래잔액 등 기재)를 첨부하여 신고하며, 해외거래소 등 거래내역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를 기재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함.

참고 5

가상자산거래내역의 신고

주요내용

- **(목적)** 공직자 가상자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 **(신고대상) 재산공개대상자**(법 제10조제1항)
- **(신고시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 **(신고사항)** 국내·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예치금(영 제5의2제2항)
- **(신고내용)** 거래금액·거래방법에 관계없이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영 제5의2제2항)

  ※ 직계비속 중 혼인한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및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

- **(의무위반시 제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가능(법 제22조제2호)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 기간)** '24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24.1.1.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24.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고객명, 계좌번호, 조회기간,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국외거래소 등과 같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

    ※ 공직윤리시스템(PETI)의 [가상자산변동사항신고]에 파일 첨부

- **(제출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 종료일인 '25.2.28.(금)까지 제출

주요 실수 사례

▌기타

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것은 문제되지만, 과다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액을 여유있게 신고함

☞ **재산신고는 등록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재산을 신고하지 않거나(누락), 많이 신고하거나(과다), 축소 신고하는(과소) 것 모두 잘못된 신고임. 심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② 9월경 최초 신고하고 12. 31.까지 기간이 짧아 특별히 재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전체 변동없음'으로 신고

☞ **변동대상기간이 짧더라도 최소한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예금, 보험, 주식 등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확인 후 신고해야 함**

※ '전체 변동없음' 신고시 가중 처분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

③ 지난번 신고 때 특별히 지적 받은 사실이 없어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신고함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 잘못 신고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또는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 지적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항목별 신고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후 신고해야 함**

Q&A 기타

Q 1. 재산신고를 잘못한 경우 어떠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A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을 수 있고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허위자료 제출·거짓 소명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하거나 심사에 응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처분을 받을 수 있음

Q 2.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A

- 병가,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재산공개자는 20일까지, 그 밖의 등록의무자는 30일까지 등록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음

Q 3. 부모-자녀간 등 등록대상 내에서 발생한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하는지?

A

- 자녀의 통학 편의 등을 위해 원룸 보증금을 대여한 경우, 자녀의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 부모-자녀간 발생한 사인간 채권·채무도 신고해야 함

4 변동요약서 작성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및 순재산 증감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 **(증감액 계산)** 총괄표상의 증감액(가액으로 계산)과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상 순재산 증감액은 계산방식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를 수 있음
  ※ 순재산 증감액은 가액변동 금액은 제외된 금액이므로 증감사유를 가액변동으로 기재하면 안됨
- **(작성방법)**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본인소득, 본인 외 소득자수** 및 **소득금액**을 기재
  - 소득은 천원 단위로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을 세전 기준으로 합산 신고
    * '24년 정기 변동신고를 한 사람 : '24. 1. 1.~12. 31. 기간 소득
  ※ '23.10.1.~'24.9.30. 중 최초(승진) 또는 재등록한 사람 : 해당일~'24.12.31. 기간 소득
- **(오류확인)** 소득대비 **순재산의 증감 폭이 큰 경우** 재산의 증감 현황, 재산의 가액 입력 오류(단위 입력 오류 포함) 등 **총괄표에 기재된 재산항목을 재확인**
  ※ 매입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의 누락 확인, 건물임대 보증금 신고 여부 확인, 가액 오기 확인, 사인간 채권·채무, 소득금액 누락·과다 등 확인

▌변동요약서 작성 예시

- 소득이 6천만원인데 순재산 6천만원 증가인 경우 증가 사유
  - (수입) 급여 5천만원, 임대소득 1천만원, 펀드평가액 1천만원, 상속 3천만원
    (지출) 자녀교육비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 소득이 1억원(본인 6천만원, 배우자 4천만원)인데 순재산 2천만원 감소인 경우 감소 사유
  - 자녀유학비 4천만원, 부모요양비 3천만원, 주택담보이자 1천만원, 펀드손실 1천만원, 생활비 3천만원(※ 생활비 사용내역은 연말정산서 등 참조)
- 부동산 매입·매도 등을 위해 계약금을 지급 또는 수령한 경우 해당 내역

5 공개목록 작성(재산공개대상자만 해당)

관보를 통해 **대국민 공개가 되는 사항**으로 재산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

- (개인정보) 재산신고서 작성 후 자동 생성되는 공개목록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소속·직위) 신고기준일의 소속 및 직위를 기입
  - (광역의원) 【소속 : ○○ 시·도의회】 / 【직위 : 장/의원】
  - (기초단체장) 【소속 : ○○ 시·도 ○○ 시·군】 / 【직위 : 시장·군수·구청장】
  - (소속기관) 【소속 : ○○부 ○○(기관명)】 / 【직위 : 사장, 총장 등】

  예 교육부 부산대학교/총장,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 (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은 **번지**와 **동·호수 기재 생략**

  예 단독주택 : ○○시 ○○동 대지 --㎡ 건물 --㎡
  아파트 : ○○시 ○○동 ○○아파트 건물 --㎡
  특히, 외국 소재 부동산 소유권 등의 경우 세부주소가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 필요
- (자동차) 연식, 차종, 배기량을 기재하고, **차량번호**와 **차량 제조회사**는 기재 **생략**

  예 2013년식 소나타 배기량(2000cc)
- (채권·채무) 채권·채무자의 **주소, 성명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
- (고지거부 등) 고지거부하거나 등록제외한 친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변동사유란에 기재(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
- (변동사유) 매도·매입·상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주요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 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 개인별, 계좌별로 특이사항이 있으면 기재

  예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사모펀드 유형을 변동사유에 기재

6 신고서 제출

재산항목별로 정확하게 신고한 후 **반드시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신고마감) 2025.2.28.(금)** 24:00이전까지 제출
- **(제출방법)** 각 재산항목 '저장' 후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 수정)** 2025.3.10.(월)까지 신고서 수정 가능. 단, **'신고서 수정 요청'** 버튼 클릭 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승인된 경우에만 수정 가능**함
  ※ 신고기간(1.1.~2.28.) 중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언제든지 수정 가능

참고 6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예시)

소 속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직 위	의원	성 명	김공직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550,000	620,000	350,000	820,000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1,000㎡	100,000	20,000	0	120,000	가액변동
본인	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200번지 2,000㎡ (1,000㎡ 증가)	100,000	200,000 (250,000)	0	300,000	대여금 회수로 매입
배우자	잡종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0번지 1,000㎡ (1,000㎡ 증가)	0	200,000	0	200,000	장인으로부터 증여
조부	임야	서울 강남구 논현동 400번지 0㎡ (1,000㎡ 감소)	200,000	0	200,000 (250,000)	0	부의 대지매입에 사용
부	대지	서울 종로구 부암동 500번지 990㎡ (990㎡ 증가)	0	200,000 (220,000)	0	200,000	조부의 임야매도금으로 매입
본인	대지	서울 종로구 누상동 151-3번지 500㎡ (500㎡ 감소)	150,000	0	150,000	0	매도
▸ 건물(소계)			350,000	600,000	150,000	800,000	
본인	아파트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80㎡ (건물 80㎡ 증가)	0	150,000 (150,000)	0	150,000	대지매도로 구입
본인	아파트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삼성아파트 90㎡ (건물 90㎡ 증가)	0	150,000 (500,000)	0	150,000	신규분양, 분양가 : 500,000천원, 전세보증금으로 납입
배우자	연립 주택	서울 종로구 적선동 경희궁빌라 90㎡	100,000	50,000	0	150,000	가액변동
배우자	연립 주택 (분양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덕수궁빌라 90㎡	100,000	100,000 (300,000)	0	200,000	중도금납부, 분양가 : 300,000천원, 건물임대료로 납부
부	전세권 (임차권)	서울 종로구 적선동 롯데아파트 0㎡ (90㎡ 감소)	150,000	0	150,000	0	계약만료
차남	근린 생활 시설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상가 100㎡ (건물 100㎡ 증가)	0	150,000	0	150,000	외조부로 부터 증여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7,000	25,000	1,000	31,000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에쿠우스 배기량 (3,500cc) 증가	0	25,000 (25,000)	0	25,000	신규구입
배우자	자동차	2002년식 뉴소나타 배기량 (2,000cc)	7,000	0	1,000	6,000	가액변동
▸ 현금(소계)			10,000	0	5,000	5,000	
배우자		현금 감소	10,000	0	5,000	5,000	생활비 지출
▸ 예금(소계)			135,000	25,000	38,000	122,100	
본인		국민은행 10,000(15,000 감소), 우리은행 5,000(3,000 증가)	17,000	3,000	15,000	5,000	
배우자		우리은행 30,000(20,000 감소)	50,000		20,000	30,000	
부		농협 50,000(20,000 증가), 대한생명보험 30,000 (2,000감소)	62,000	20,000	2,000	80,000	
차남		삼성생명보험 7,000(2,000 증가), 국민은행 0 (1,000감소)	6,000	2,000	1,000	7,000	
차남	가상자산 예치금	업비트 100(100 증가)	-	100	-	100	예금 이체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0	0	0	0	
▸ 증권(소계)			95,000	15,000	30,000	80,000	
본인	상장 주식	삼성전자 5,000주, KT 100주	25,000	5,000	0	30,000	
배우자	상장 주식	한국기업 5,000주(100주 증가), KT 0주(100주 감소)	20,000	10,000	10,000	20,000	가액변동 채권회수로 구입
배우자	공채	서울도시철도공사, 50좌	50,000	0	20,000	30,000	
▸ 채권(소계)			70,000	20,000	10,000	80,000	
본인		사인간 채권 감소	20,000	0	10,000	10,000	증권매입에 사용
배우자		사인간 채권 증가	50,000	20,000	0	70,000	예금인출로 대여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채무(소계)			70,000	140,000	30,000	180,000	
본인		사인간 채무 감소	20,000	0	10,000	10,000	예금인출로 일부 상환
배우자	금융기관 채무	국민은행 10,000(20,000 감소), 우리은행 20,000(10,000 증가), 신한은행 40,000(20,000 증가)	50,000	30,000	20,000	60,000	봉급으로 상환
부	기타	중앙기업 10,000(10,000 증가)	0	10,000	0	10,000	생활비 사용
부	건물 임대 채무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	0	100,000	0	100,000	지인에게 대여
▸ 금 및 백금(소계)			20,000	15,000	0	35,000	
배우자		24K 금 100g(100g 증가)	0	10,000 (10,000)	0	10,000	신규구입
배우자		24K 금 200g	20,000	5,000	0	25,000	가액변동
▸ 보석류(소계)			30,000	5,000	0	35,000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1캐럿 증가	0	5,000 (5,000)	0	5,000	예금인출로 매입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 5캐럿	30,000	0	0	30,000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130,000	0	120,000	10,000	
본인	도자기	도자기(고려청자), 작가미상, 160×320cm	120,000	0	120,000 (150,000)	0	매도후 출자
본인	서예	서예 (서예, 60×40㎝, 계공, 1994)	10,000	0	0	10,000	
▸ 회원권(소계)			20,000	20,000	11,000	29,000	
본인	골프	한국컨트리클럽 감소	10,000	0	10,000 (12,000)	0	콘도회원권 구입에 사용
본인	골프	서울C.C	10,000	0	1,000	9,000	가액변동
배우자	콘도 미니엄	현대콘도미니엄 증가	0	20,000	0	20,000	
▸ 지식재산권(소계)			-	-	-	-	
본인	특허권	○○에 관한 특허 증가	-	-	-	-	연·월·일 신규등록

단위(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 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합명·합자·출자지분(소계)			80,000	20,000	0	100,000	
본인	출자	(유)서울기업, 출자가액 100,000천원, 지분비율 : 40%, 연간매출액100,000천원 (10,000천원 감소)	80,000	20,000	0	100,000	출자금액 증가
▸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소계)			-	-	-	-	
본인	출연	한국장학재단, 보유직위: 재단이사장, 출연금 100,000천원	-	-	-	-	
▸ 가상자산(소계)			-	3,000	-	3,000	
차남	가상 자산	비트코인 1.5(1.5개 증가)	-	3,000	-	3,000	예금으로 구입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항			-	-	-	-	
장남		고지거부	35,000	0	35,000	0	독립생계유지
장녀		등록제외	20,000	0	20,000	0	결혼
▸ 총 계			1,567,000	1,508,100	745,000	2,330,100	증감액 : 791,000천원 (가액변동 68,000천원)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등록의무자 (서명 또는 날인)

제 3 장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5.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대상자 등)

제 3 장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 재산신고 방법

2025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는 공직윤리시스템(PETI) 입력방법을 숙지하여 소유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윤리시스템 재산등록 순서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 63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 63
1-2. 로그인 후 사전 확인 사항 ····· 65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 66
2-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 66
2-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 68
2-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 69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 70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 72
3-1. PETI 메뉴 주요기능 ····· 72
3-2. 신고서 작성화면 ····· 73
3-3. 본인정보 입력 ····· 74
3-4. 친족 정보 입력 ····· 76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 80
• 부동산(토지 · 건물) 정보열람 및 신고방법 ····· 83
• 금융정보 활용입력방법 ····· 93
• 비상장주식 신고방법 ····· 99
• 가상자산 입력방법 ····· 124
• 신고내역검증 ····· 130
3-6. 변동요약서 작성 ····· 133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135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136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 137
4-1. 제출신고서 조회 ····· 137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138

5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대상자 등) ····· 139

1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

1-1. 시스템 접속 [정기변동신고 기간 메인 화면]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주소창에 “https://www.peti.go.kr”을 입력하여 “재산신고 바로가기”로 접속
  - Internet Explorer, Microsoft Edge, Chrome 브라우저 사용 가능
- 정기변동신고 시 첫 화면에 표시되는 각종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 로그인 이용안내 클릭하여 로그인 시 오류사항에 대해 조치방법 확인

- **신고하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 시 이동하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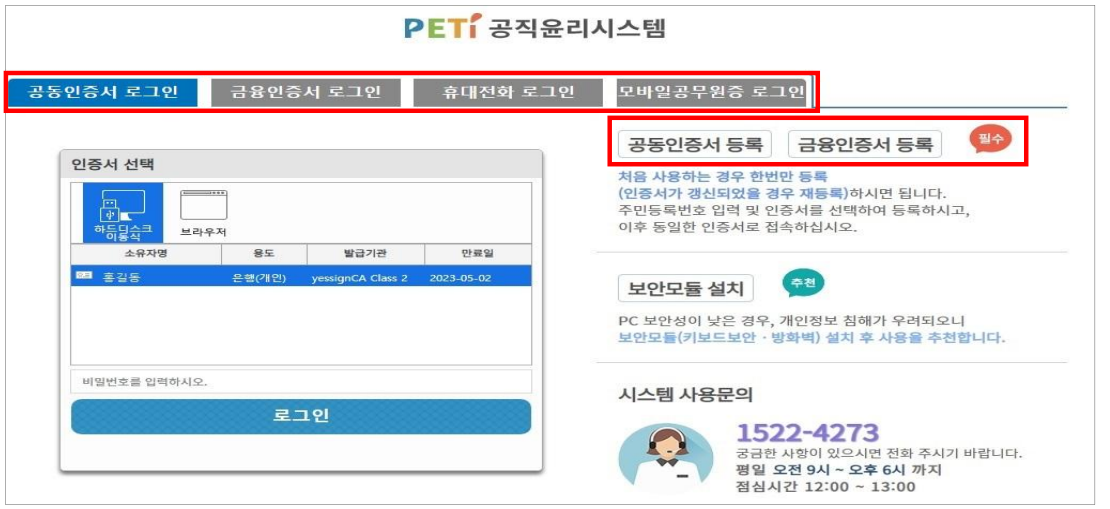

-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클릭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거나 처음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경우
  - 사용하는 인증서에 따라 **공동인증서 등록** 또는 **금융인증서 등록** 클릭하여 등록
  - 사용할 인증서 암호 입력하여 시스템 접속
- 기존에 사용하던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사용할 인증서에 따라 암호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하여 시스템에 접속
- 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활용한 '휴대전화 로그인' 가능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 로그인' 가능

사용 가능한 인증서의 종류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 공무원용 인증서,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통해 발급
  *** 담당부서는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www.gpki.go.kr)에서 확인**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 민간인증기관 등을 통해 발급
  *** 금융인증서는 인터넷망에서만 사용 가능**

※ 인증서 저장매체 아이콘과 인증서 목록이 안보인다면
인터넷익스플로러(IE) 〉 인터넷옵션 〉 보안 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선택 후 "사이트" 클릭하여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peti.go.kr"을 등록하고 로그인 확인
☞ 크롬(Chrome), 엣지(MS Edge) 브라우저는 별도 설정이 필요 없음

1-2. 로그인 후 사전 확인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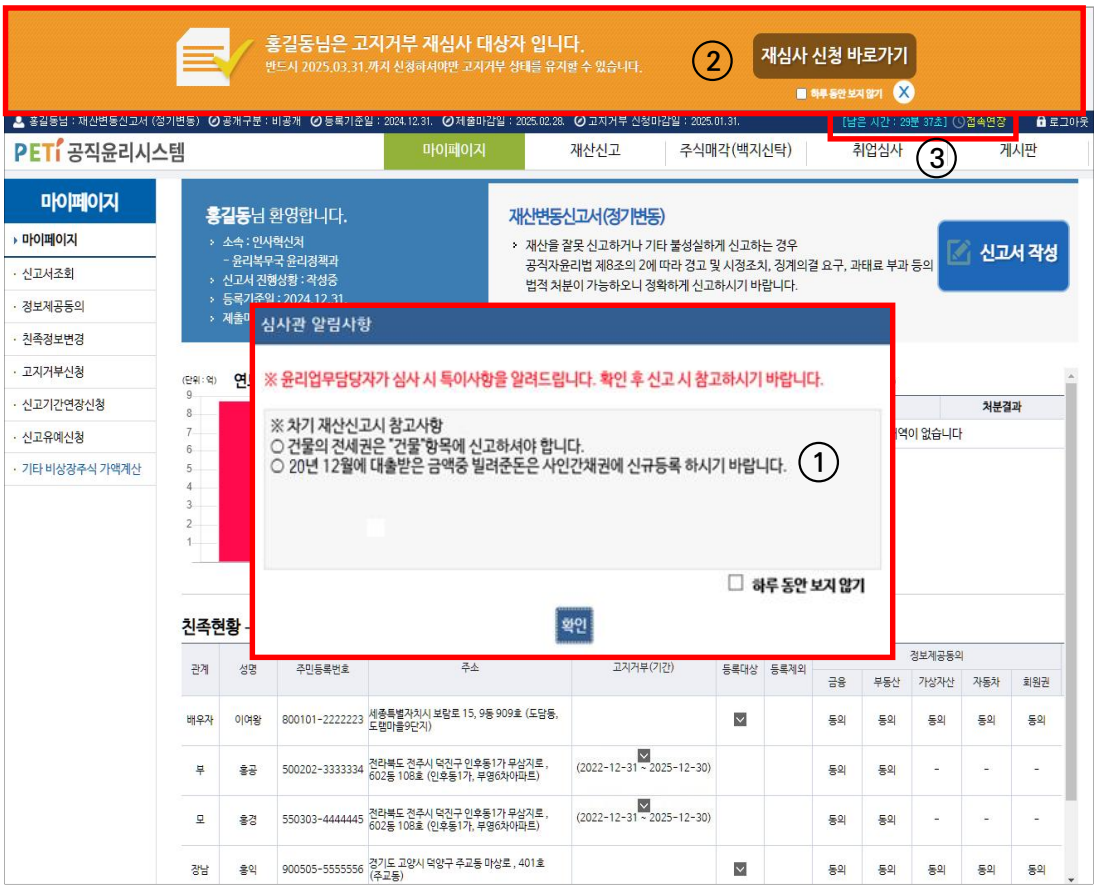

- ①은 심사담당자가 이전 신고서 심사 중 등록의무자가 유의할 사항을 메모한 내용
  - 심사관 알림사항이 있는 등록의무자의 경우만 표시됨
  - 이후에는 재산 항목별 신고 시 '심사관 알림사항' 버튼으로 알림메모 상시 확인 가능
- ②는 올해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대상인 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는 메시지 창으로 재심사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고지거부 신청 메뉴로 이동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지 3년째 되는 해에 계속해서 친족의 재산을 고지거부하려는 경우 2025.1.1.~3.31.까지 반드시 재심사 신청해야 함
- ③ 자동 로그아웃되는 시간으로, 접속연장 클릭하여 남은시간 연장 가능

2 고지거부 허가 현황 및 정보제공동의서 현황 확인

2-1. 고지거부 허가(재심사)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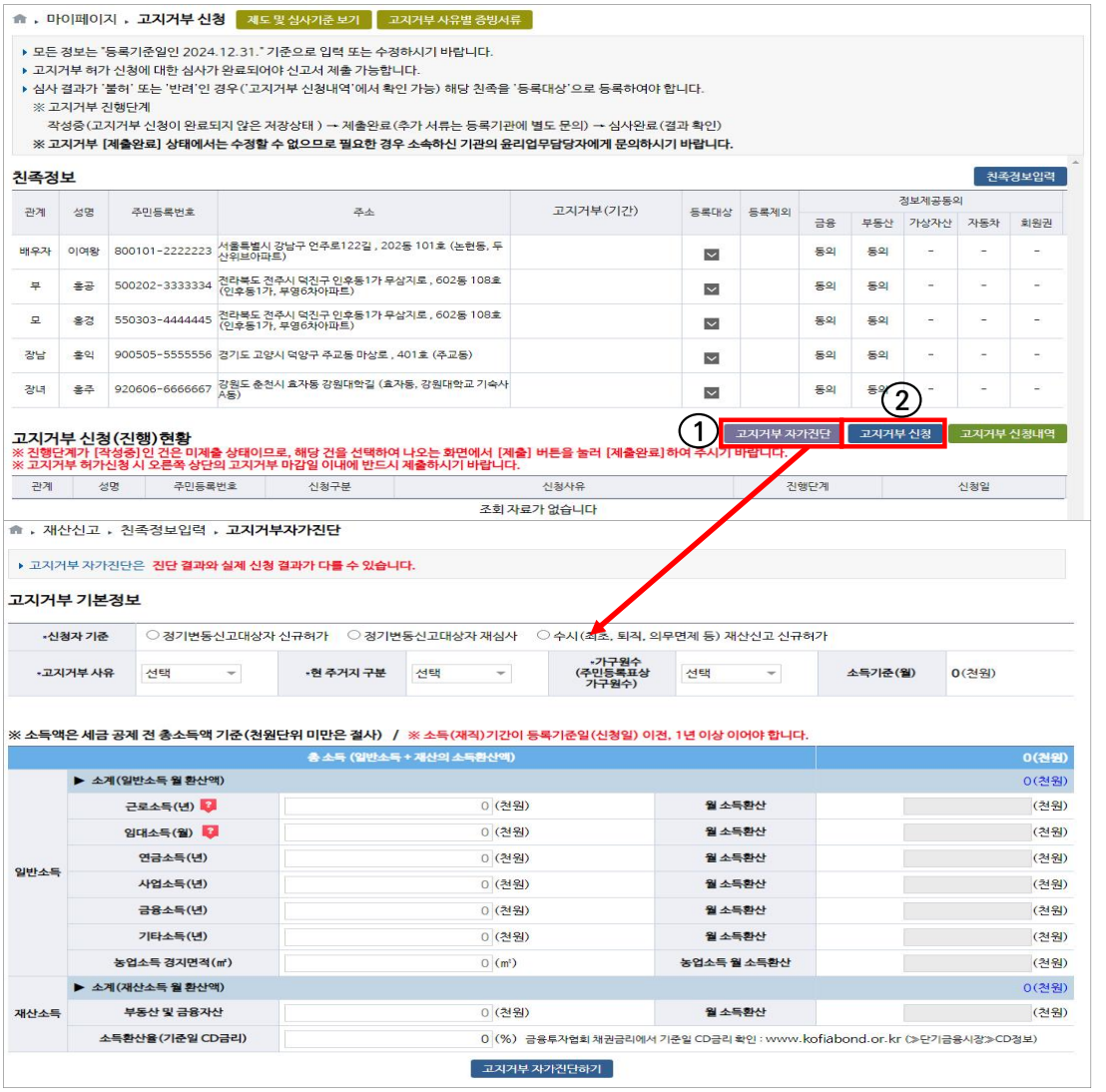

- ① 고지거부 신청 전 **고지거부 자가진단**을 통하여 허가요건에 충족한지 확인 가능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신규허가 : 2024.12.31.기준 허가요건 적용('24년 소득기준 적용)
  - 정기변동신고대상자 재심사 : 2025.1.1. 이후 허가요건 적용('25년 소득기준 적용)
  - 수시 재산신고 신규허가 : 수시신고가 발생한 해('25.1.1. 이후) 허가요건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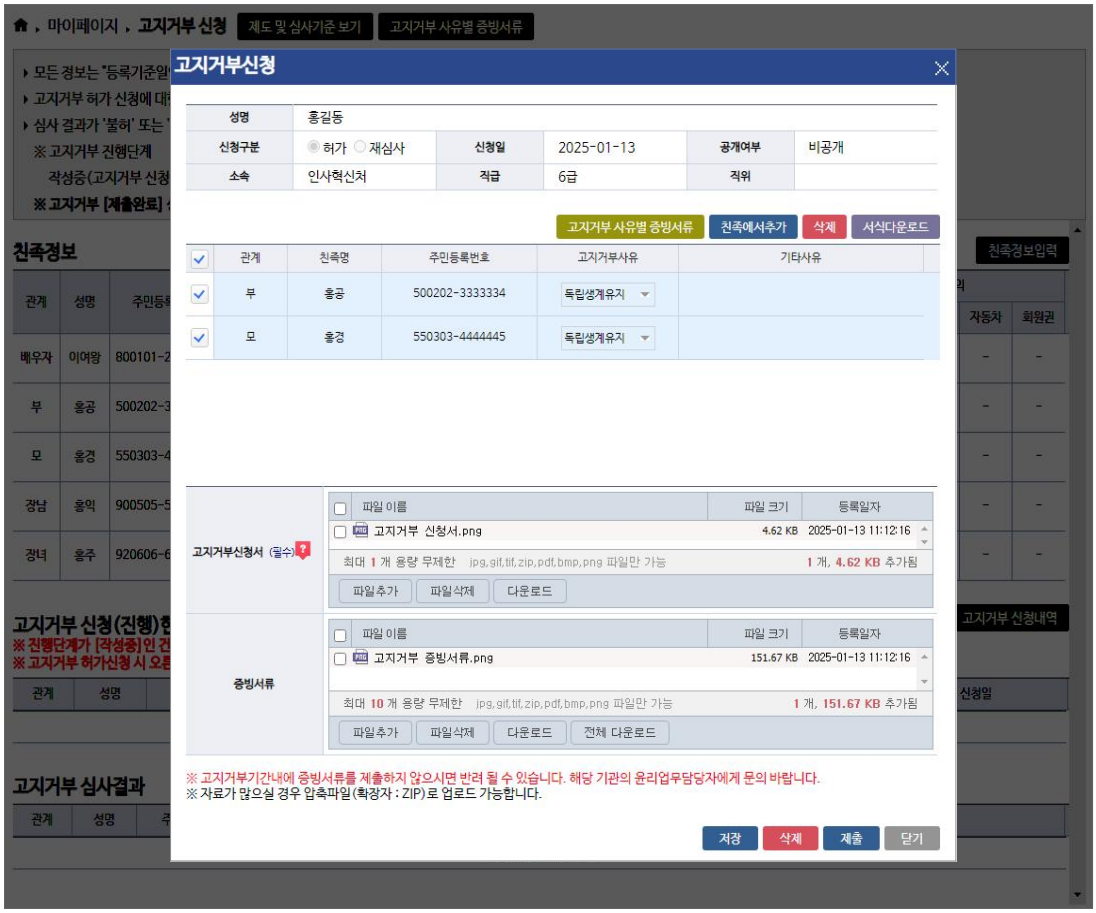

- ② 신규로 고지거부를 신청할 경우 [마이페이지] → [고지거부신청] 메뉴에서 **고지거부 신청** 버튼을 클릭
- **친족에서추가** 버튼 클릭하여 고지거부 신청 친족을 선택 후 고지거부 사유 등 신청내역을 작성, 고지거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저장**하고 상세화면에 생성되는 **제출**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만 고지거부 신청이 완료됨
  - **서식다운로드** 클릭하여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한 뒤 본인 및 친족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출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심사결과가 '불허'인 경우 해당 친족의 재산항목을 모두 등록하여야 함

2-2. 고지거부 신청(진행) 현황

- 고지거부 진행단계별 유의사항
  - **(작성중)** 신청내역 작성 중으로 저장만 된 상태, 고지거부 신청기한 내에 제출 필요
  - **(제출완료)** 신청내역이 제출되고 윤리업무담당자가 심사 중인 상태, 신청내역 수정이 불가하므로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요청

    ※ 고지거부 허가신청이 심사 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이 불가하며 심사완료 이후 제출 가능(재심사 신청은 심사여부 관계없이 신고서 제출 가능)
  - **(심사완료)** 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족정보' 입력 시 해당 친족의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여 신고서 제출

    ※ [신고서작성]→[친족정보]에서 해당 친족을 클릭하여 상세화면에서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체크

2-3. 고지거부 심사결과(허가) 현황

- ① 고지거부 신청내역 클릭하여 이전 신청한 고지거부 상세내역 확인
- ② 고지거부 심사결과에서 "고지거부 기간"을 확인하여 고지거부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심사 신청

※ 고지거부 기간의 만료일이 2025.12.30.인 대상자는 2025.1.1.~3.31. 중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 대상자임

2-4. 금융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현황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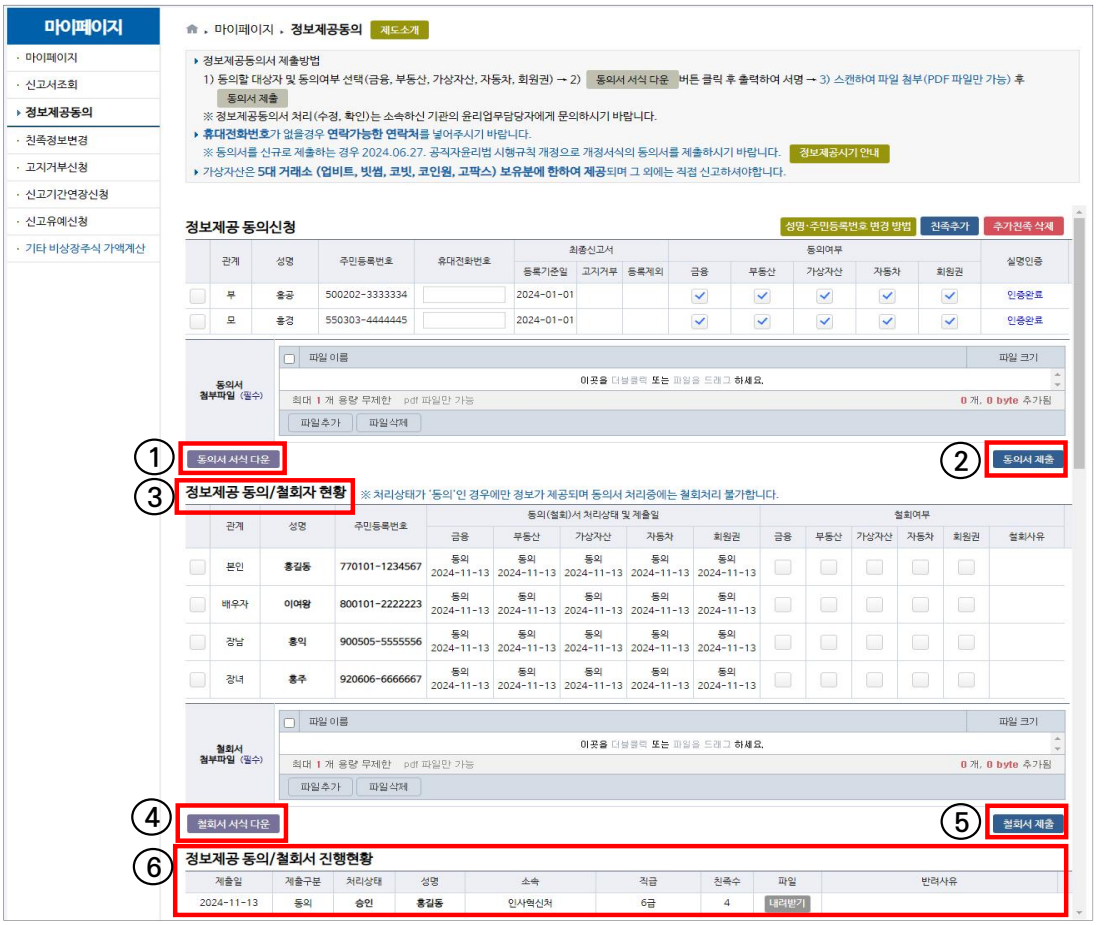

- [마이페이지] → [정보제공동의]에서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 가능
- 동의서 제출 방법
  - ① 동의할 친족에 대해 체크 후 연락처 기재하여 동의서 서식 다운 클릭한 뒤 서식에 체크한 친족 인적사항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첨부

※ 2024. 6. 27.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으로 제출

※ 실명인증에 실패한 대상자의 정보제공동의서는 제출 불가하므로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변경 후 실명인증하여 동의서 제출 진행(외국인등록번호 소지자는 실명인증 여부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

- ② '정보제공 동의신청'의 목록 중 동의하고자 하는 친족을 체크(✔) 후 동의서 제출 을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능
- ③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명단을 최종 확인

• 철회서 제출 방법

- ④ 철회서 서식 다운 을 클릭하여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입력내용을 확인 후 출력하여 대상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 스캔하여 첨부
- ⑤ '정보제공 동의/철회자 현황'에서 철회하고자 하는 대상자 체크(✔) 후 철회서 제출 클릭하여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철회서 제출 가능

• ⑥ '정보제공 동의/철회서 진행현황'에서 이전 동의/철회서 제출이력 확인

※ 동의서 제출 후 첨부파일 변경, 친족명단 추가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윤리업무 담당자에게 반려 요청하여 내용 보완 후 제출

3 정기재산변동신고서 작성

3-1. PETI 메뉴 주요기능

- ① 은 등록의무자의 신고서 종류 및 일정 안내
- ② 는 PETI 시스템의 주요 메뉴

메뉴명	하위메뉴	주요기능
신고서조회	제출신고서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조회 및 출력
	재산변동요약서 조회	과거 변동요약서 조회 및 출력
	공개목록조회	과거 공개목록 조회 및 출력(공개자에 한함)
	연도별 변동흐름 조회	과거 제출한 신고서 간의 재산변동흐름 조회
	소명서관리	소명서 작성 및 소명이력 조회
	보완신고서 관리	보완신고 이력 및 보완요청 내역 조회
정보제공동의		정보제공동의·철회서 제출 및 신청내역 확인
고지거부신청		고지거부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신고기간연장신청/신고유예신청		기간연장, 신고유예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
기타 비상장주식 가액계산		기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

3-2. 신고서 작성화면

- 로그인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의 재산신고 메뉴 또는 화면 우측의 신고서작성 버튼 클릭
- 정기변동신고서가 생성되지 않았거나, 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제출완료 버튼이 보임
- 재산등록 대상이나 신고서가 생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소속기관에 문의하여 신고서 생성 요청

3-3. 본인정보 입력

등록의무자의 본인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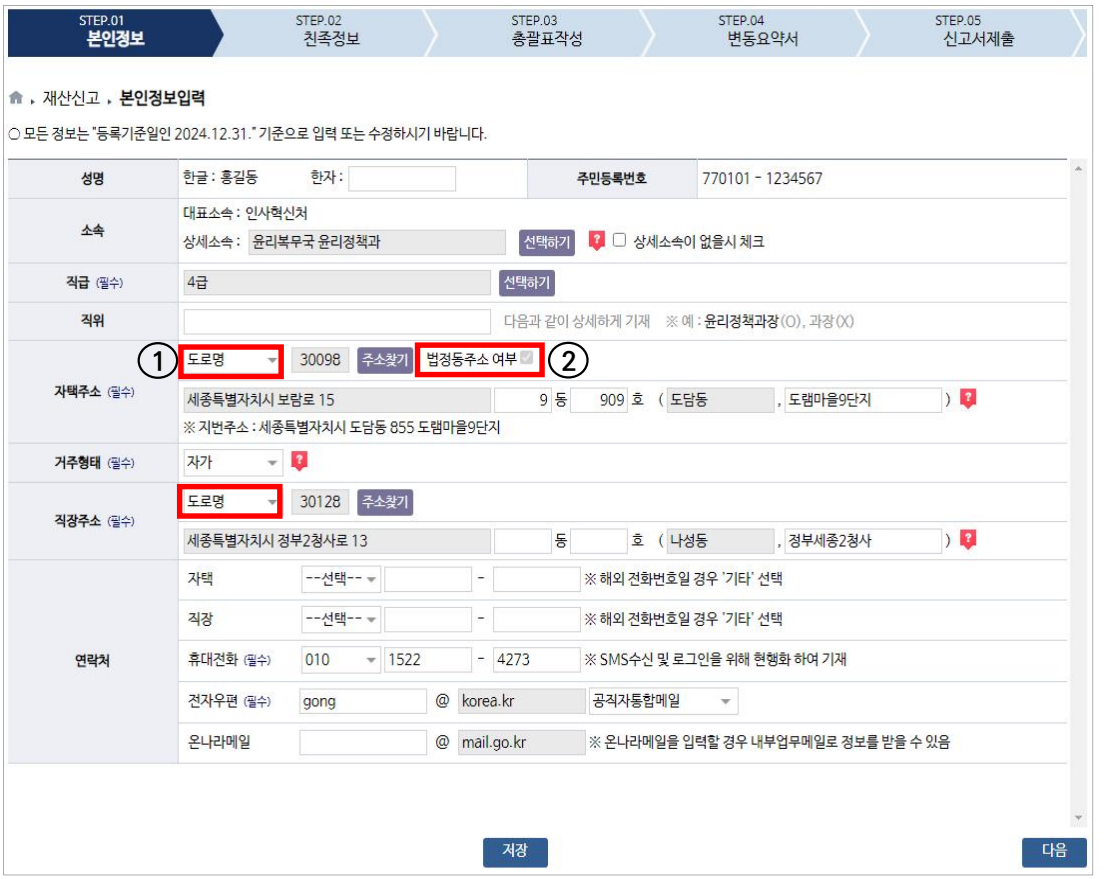

- **정기변동신고서 작성의 첫 번째 단계로, 등록기준일 현재 등록의무자의 성명, 상세소속, 직급, 직위, 자택주소 등 본인의 신상명세를 반드시 현행화하여 작성**

  ◆ **(필수)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

  - 등록의무자의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일, 신고서 종류, 소속 등의 기본정보가 잘못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정정 요청
  - 소속은 상세소속만 변경이 가능하며,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상세소속을 조회한 후 입력

    ※ 대표소속이 변경된 경우 소속기관의 윤리업무담당자에게 소속 변경을 요청

- 주소 입력 방법

구 분	처리방법
도로명주소가 있는 국내 주소지	주소찾기 로 검색 후 선택
도로명주소가 없거나 국외(해외)인 경우	① 을 [기타(국외 등)]로 선택 후 주소를 직접 입력

- ② 법정동주소 여부 에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소찾기 선택하여 주소 재입력
- 항목 입력을 마치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친족정보입력' 화면으로 이동
- 의무자의 자택주소 변경 시 친족주소 일괄 변경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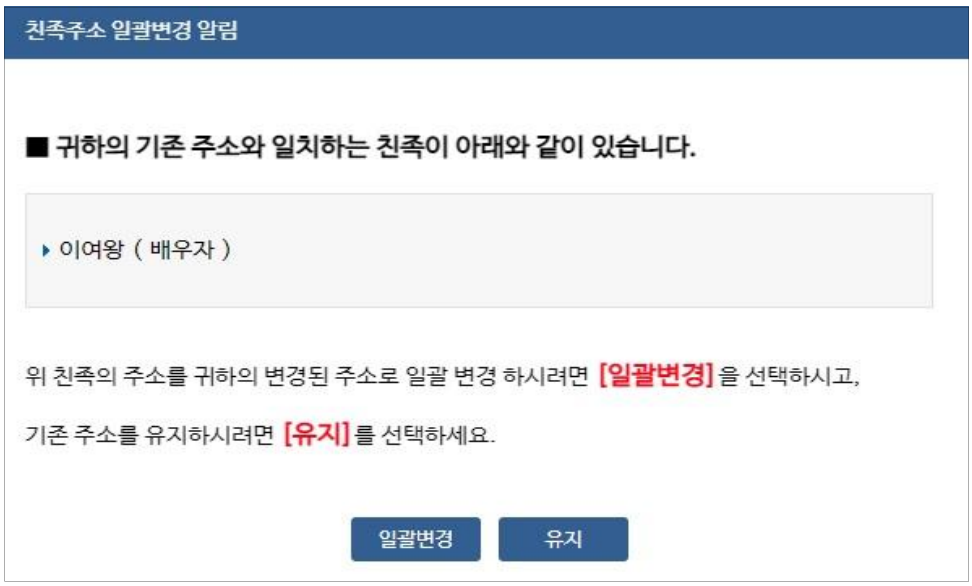

기 능	내 용
일괄변경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주소가 같은 경우) 친족의 자택 주소를 등록의무자의 변경된 주소지로 일괄 변경
유지	(등록의무자와 친족의 주소가 다른 경우) 등록의무자의 자택 주소만 변경하고 친족의 자택 주소는 '친족정보입력'에서 직접 변경

3-4. 친족 정보 입력

친족현황(등록의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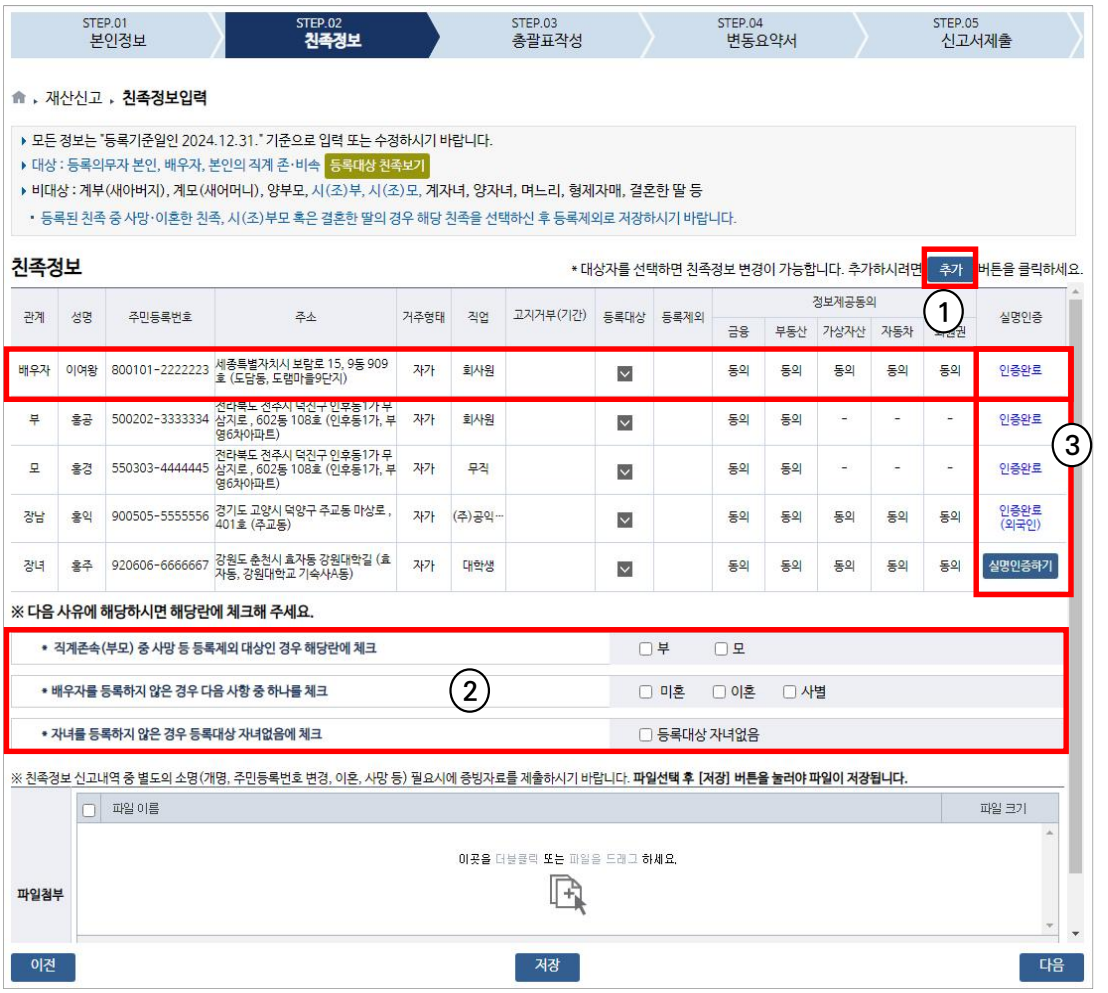

- 등록기준일('24.12.31.) 시점으로 이전과 변동사항이 있는 친족의 상세화면에서 주소, 직업, 등록상태(등록대상자, 고지거부자, 등록제외자), 변동사유 등을 수정

  ※ 기존에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친족의 등록상태는 이미 '고지거부자'로 체크되어 있으며, 신규로 고지거부 "허가" 받은 친족은 고지거부 심사완료 후 등록상태를 '고지거부자'로 선택

- ① 신규 친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존 친족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친족을 선택하여 등록상태, 직업, 주소 등을 수정
- ② 에서 아래 내용 확인 후 해당되는 내용에 체크하여 저장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부/모} 란에 반드시 체크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혼/이혼/사별} 란에 반드시 체크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등록대상 자녀 없음} 란에 반드시 체크

- ③ 실명인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완료'로 표시되며, 실명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친족이 있을 경우 **실명인증하기** 버튼 표시되어 클릭 시 아래 팝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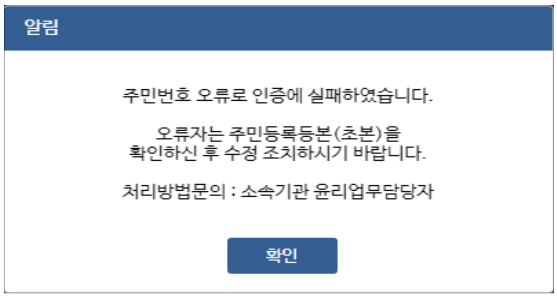

※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등록하여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대상자만 부동산 및 금융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미등록 친족 (상단 친족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제공 동의자 명단입니다.) 추가 : 미등록 친족 추가, 제외 : 정보제공동의 철회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동의(철회)서		부동산동의(철회)서		가상자산동의(철회)서		자동차동의(철회)서		회원권동의(철회)서		비고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처리상태	제출일	
차남	홍차남	990909-1234567	동의	2024-11-13	동의	2024-11-13	동의	2024-11-13	동의	2024-11-13	동의	2024-11-13	미등록친족추가

- 미등록친족은 **친족정보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친족**으로, **미등록 친족추가** 클릭하여 친족에 추가

※ 등록대상 친족이 아닐 경우 제출된 정보제공동의서 철회 진행

- 사망, 혼인 등 변동 친족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여 등록
- 모든 작업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등록된 친족정보 변경 시(고지거부, 등록제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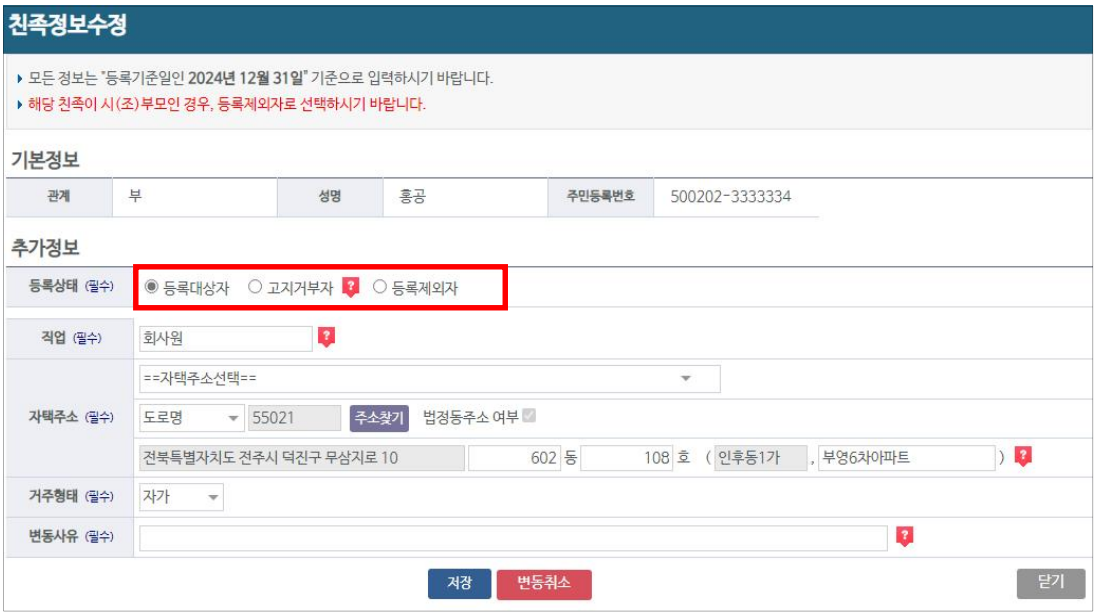

- 친족현황에서 변경할 친족의 주소를 클릭하여 친족정보 수정 처리
- 등록대상자 중 고지거부 허가받은 경우에는 '고지거부자'로, 사망, 혼인 등의 사유로 상태가 변경된 경우 '등록제외자'로 변경하고, '변동사유'에 사유와 발생일자를 입력
  - **'21.9.30.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기존 시(조)부모를 등록한 경우 '등록제외' 처리 후 친(조)부모 등록**

※ 고지거부 허가받은 친족(고지거부 심사가 완료된 경우)을 고지거부자로 체크하지 않고 다음 진행할 경우 아래 알림창 나타남

친족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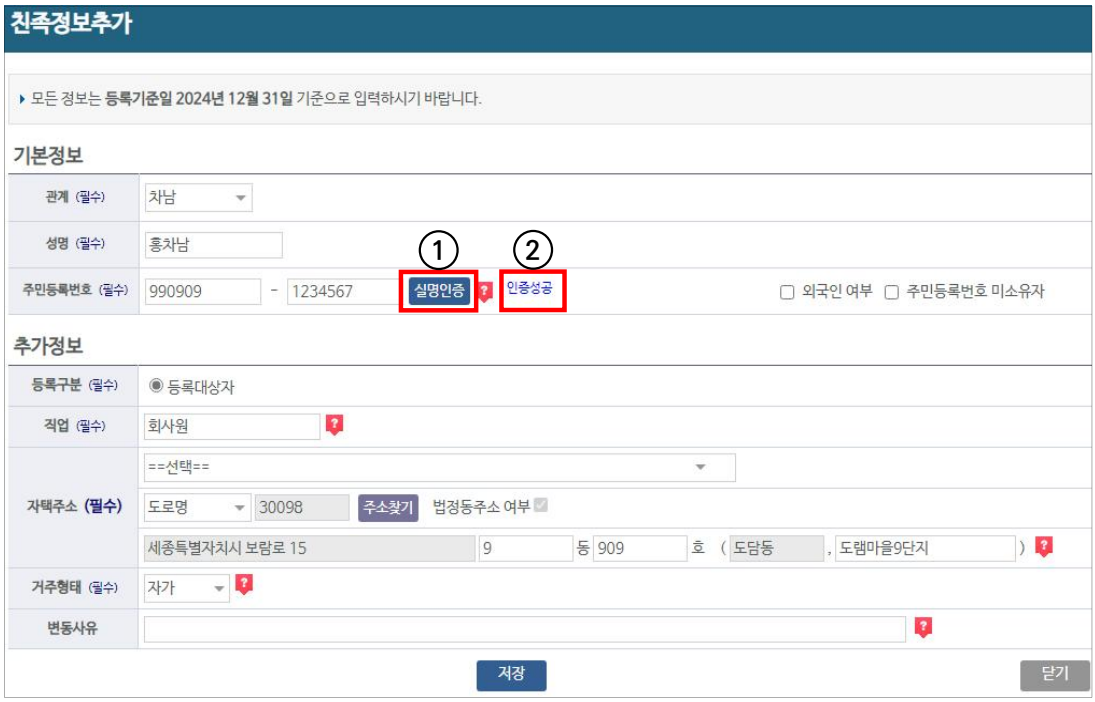

- 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클릭
- ② 실명인증이 완료된 경우 '인증성공'으로 표시되며, 추가정보 입력한 뒤 **저장** 클릭

※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따라 실명인증이 완료되지 않는 친족은 등록 불가

- 주민등록상 정확한 정보로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번호 소지자의 경우 실명인증 없이 친족 추가 가능

※ 외국인 등록번호 소유자인 경우

- '☑ **외국인 여부**'에 체크 후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인 경우

- '☑ **주민등록번호 미소유자**'에 체크 후 생년월일만 입력

3-5. 재산항목별 작성 방법

재산총괄표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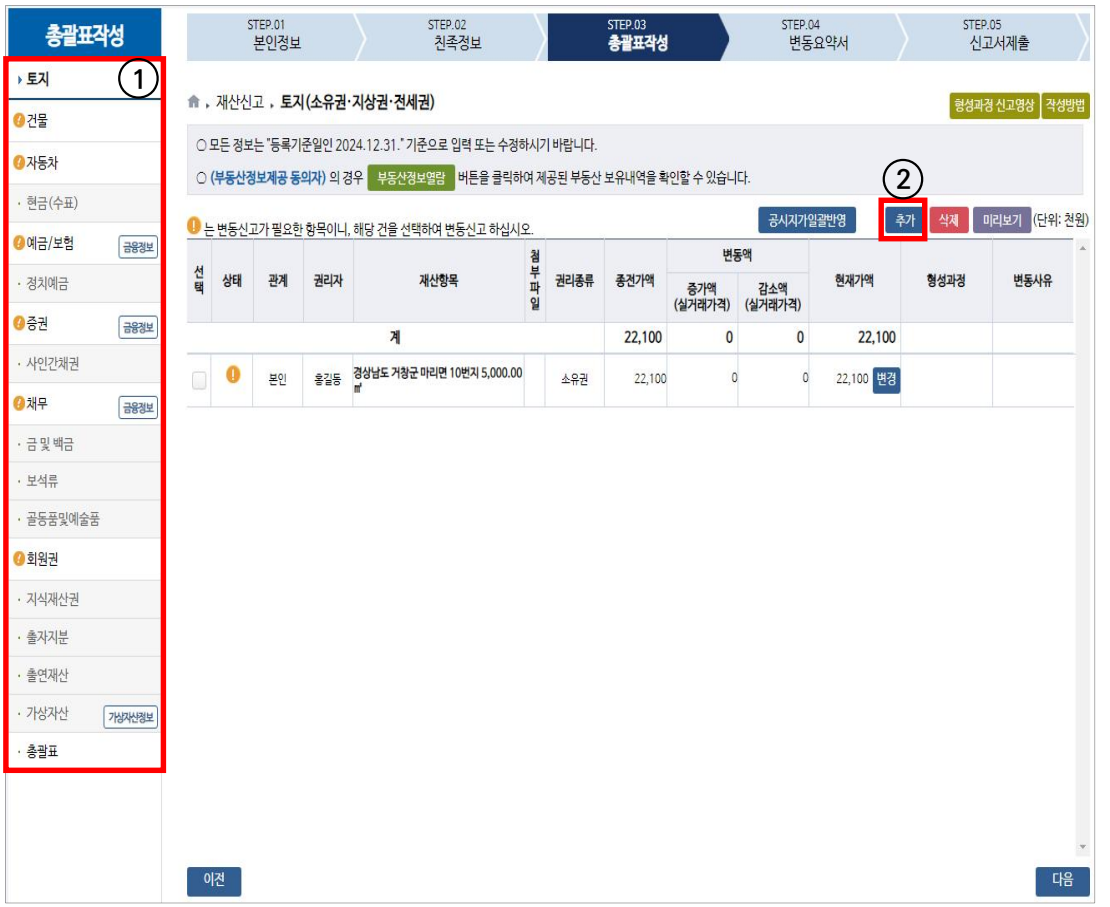

- **17개의 재산신고 항목을 클릭하여 항목별 목록이 나타나면 변경 처리**
  - 신고된 재산을 변동하는 경우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진행
  - ① '!'가 있는 항목은 변동 처리되지 않은 항목이므로 해당 재산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처리
  - ②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추가 버튼 클릭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분양권)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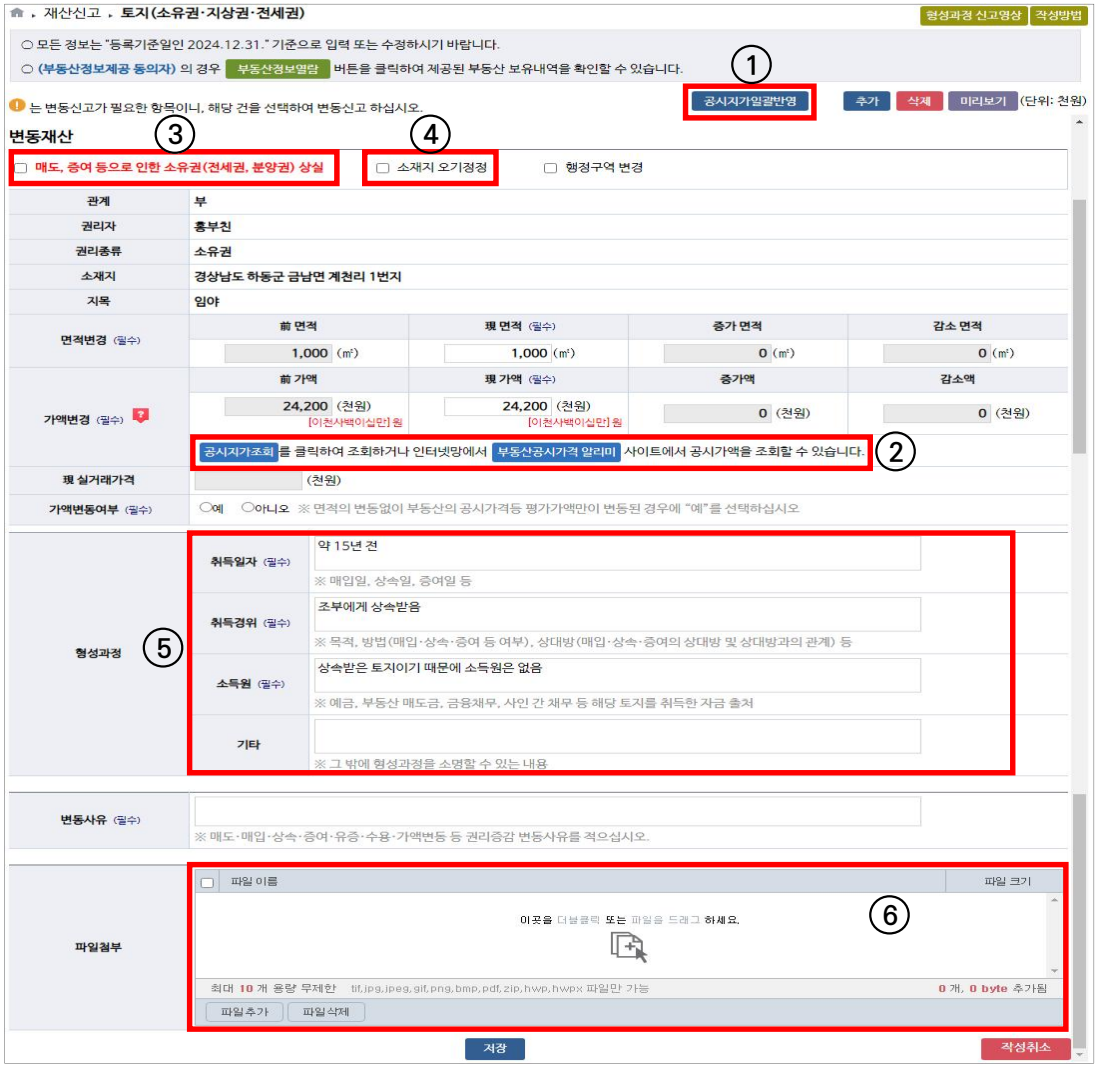

- **토지 공시지가 일괄반영**

  - ① **공시지가일괄반영** 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중 법정동 주소로 신고한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지가가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②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지가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지가조회 클릭하면 공시지가 조회 팝업이 나타남**

  - 조회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가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만 가액변경 처리(공시지가가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 **토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지가로 신고**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지가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공동소유 토지의 전체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토지는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처리한 뒤 신규 추가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
- ③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에 체크한 뒤 "現 실거래가격"란에 매도한 금액 입력하여 저장
- ④ 토지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 소재지 오기정정 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토지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 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⑤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부동산 유관부서의 경우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토지, 건물) 형성과정 필수 기재

- ⑥ 항목별 특이사항이나 참고사항 있을 경우 첨부파일 등록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부동산(토지) 정보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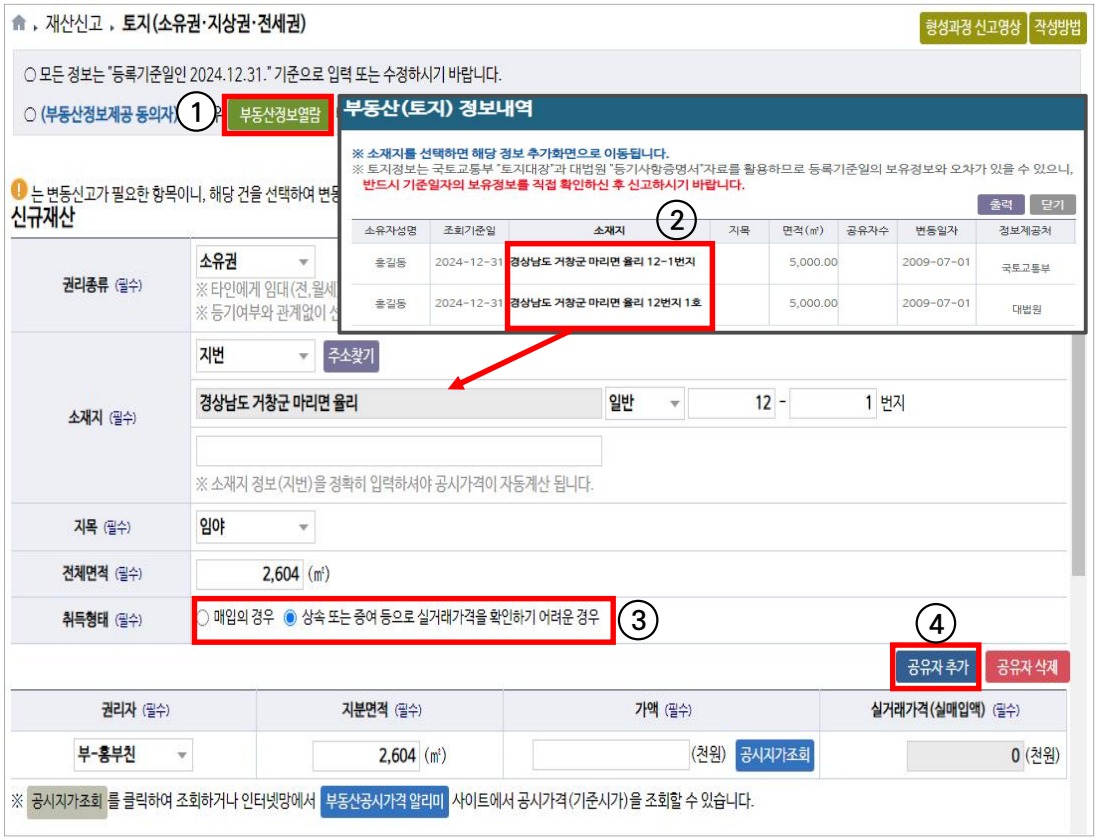

- ①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부동산 소유 정보 확인 가능

  ※ 토지정보는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자료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토지가 부동산정보열람에는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토지이므로 1건으로 등록

- ②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토지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③ 취득형태에 따라 매입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지가 조회하여 입력
- ④ 공동소유 토지는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건물(소유권·전세(임차)권·분양권) 입력방법

- **건물 공시가격 일괄반영**
  - ① 공시가격일괄반영 은 기존 신고 항목에 소유권, 사실상소유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 단독주택 중 법정동 주소로 신고한 재산항목에 대해 일괄반영 가능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아파트, 단독주택만 가능)
  - 기존 신고금액보다 조회된 공시가격이 낮을 경우 변경되지 않으며,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항목 클릭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해야 함

- ② 가액이 일괄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공시가격조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클릭하여 개별 조회하여 변경 처리(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는 인터넷망에서 사용 가능)

  - **소재지와 면적을 정확히 입력 후 공시가격조회 클릭하면 공시가격 조회 팝업이 나타남**

  - 조회되는 공동주택가격 및 가액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하여 입력

- 종전에 신고한 건물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이전 재산신고 시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현 신고기준일의 공시가격이 높아진 경우만 가액변경 처리(공시가격이 낮으면 종전가액 유지)
- 건물을 **신규 취득한 경우 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 · 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
- **면적의 증감 없이 공시가격 등 평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가액 증감분 신고**
- 공동소유 건물의 전체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물은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 분양권) 상실 처리한 뒤 신규 추가하여 정확한 정보로 신고
-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항목에 토지와 건물을 같이 신고하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분리하여 신고(아파트는 전용면적만 기재)
- ③ 매도, 증여,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분양권) 상실 에 체크한 뒤 "現 실거래가격"란에 매도한 금액 입력
- ④ 건물 소재지가 오기된 경우 ☐ 소재지 오기정정 에 체크하여 소재지 변경 가능

  ※ 건물의 매도·매입인 경우는 소유권 상실, 추가 입력 등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함

- ⑤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부동산 유관부서의 경우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부동산(토지, 건물) 형성과정 필수 기재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을 클릭하여 내용 저장

부동산(건물) 정보열람

- ①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부동산 보유정보 확인 가능

  ※ 건물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과세자료(6.1.기준)와 대법원의 등기 자료가 제공되므로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후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건물이 부동산 정보열람에는 2건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건물이므로 1건으로 등록

- ② 등록의무자 및 친족의 건물 보유내역을 보여주며, 신규로 추가할 경우 **해당 소재지 주소를 클릭**하여 기본정보가 표시되면 추가적인 정보 입력하여 저장

- ③ 취득형태에 따라 매입의 경우 실거래가격, 상속 등의 경우 공시가격 조회하여 입력

- ④ 공동소유 건물은 공유자 추가 클릭하여 소유 지분만큼의 면적·가액 입력

공동소유인 부동산(토지, 건물)의 전체면적 수정방법

- 이전 신고 시 공동명의 부동산(토지, 건물)을 신고한 경우 ① 전체면적은 바로 수정이 불가하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수정 필요
- ②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전세권,분양권) 상실 체크 후 ③ '現 실거래가격'란에 '0'을 기재하여 저장
  - 실제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오기 입력한 내용(면적 등)을 정정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변동사유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기재
- ④ 추가 클릭하여 정확한 면적 및 정보 기재 후 저장

  ☞ 공동소유가 아닌 단독소유 부동산의 면적 수정은 위 절차 없이 기존 신고 상세화면에서 바로 수정 가능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입력방법

- '자동차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자동차정보열람**을 클릭하여 자동차 소유 정보 확인 가능 (가액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하여 신고)

  ※ 자동차정보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 종전 신고 건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자동차의 경우 매매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며 보유 시 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시가표준액 등의 순으로 가액을 변동 신고
- 순수하게 평가가액만 변동된 경우에도 가액 증감분 신고(자동차보험의 차량 기준가액 등 확인)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우측 상단의 추가 버튼 클릭

– 권리자, 권리종류, 제작연도(년식), 차명(자동차명), 배기량(CC), 차량번호, 평가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공동소유일 경우 + 소유자추가 클릭하여 공동소유자 수와 지분율(소수점 이하 절사), 가액입력

※ 등록대상 친족의 공동소유 재산일 경우 소유자별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

- 매도·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 매도, 증여, 폐차 등으로 인한 소유권(저당권) 상실 에 체크
- 리스자동차는 소유권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리스 종류에 따라 신고기준 참고하여 신고
- 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평가액(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가 평가액 등)으로 신고하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
- 광업권, 어업권은 시가표준액 또는 전문가 평가액을 신고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을 클릭해 내용 저장

현금(수표 포함)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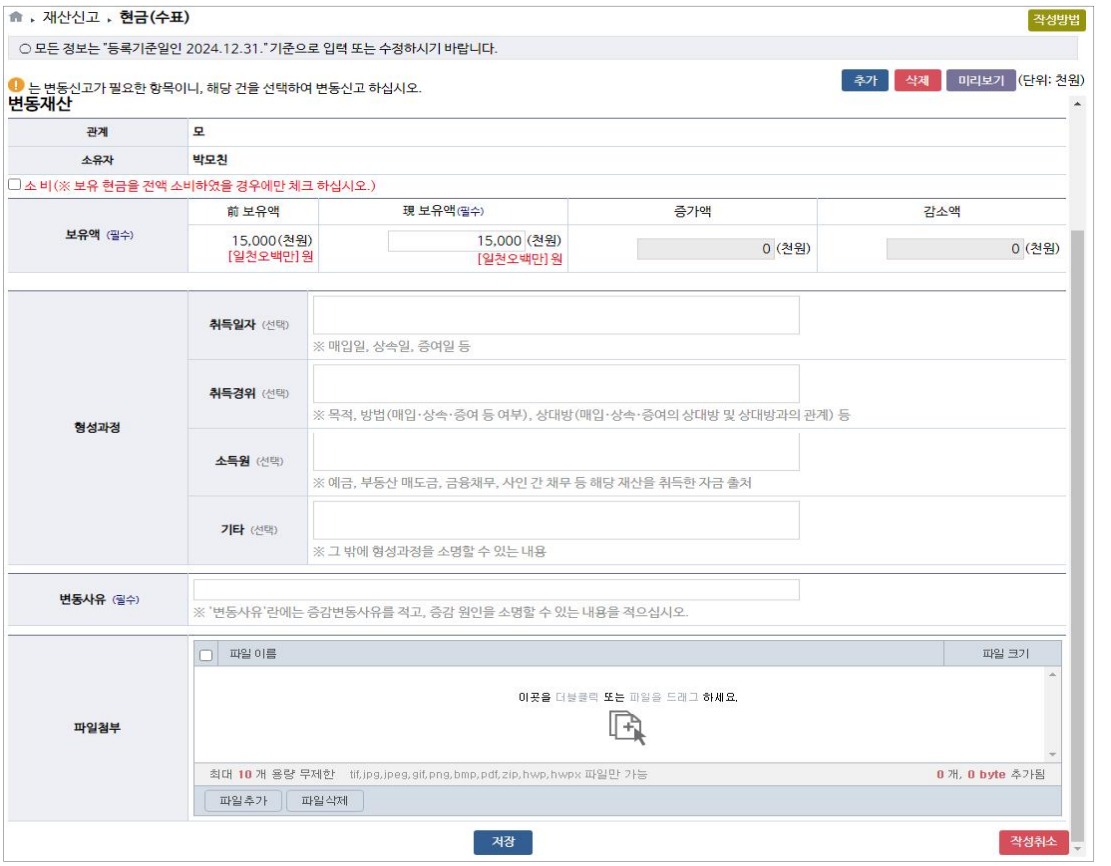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총괄표 현금항목 오른쪽의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보유액, 변동사유 입력
- 종전에 신고한 현금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등록기준일 보유액을 "現 보유액"란에 입력
- 보유액을 모두 소비했을 경우 ☐ 소 비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제공정보 일괄반영

- ① 금융 및 가상자산 정보제공 동의자에 대해 회신 받은 자료를 일괄반영하는 기능

  ※ 최초 1회만 발생하는 팝업으로 '동의' 시 예금·보험, 증권(상장주식), 금융채무, 가상자산이 회신 받은 자료로 반영, 미동의 시 재산 항목별로 '금융·가상자산정보활용입력' 으로 반영 가능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일괄반영 후 변동처리되지 않고 ⚠ 가 남아있는 항목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므로 개별 확인하여 신고 필요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 및 회신하지 않는 기관의 이전 신고 계좌(해외금융기관, 상조회 등)

  → 회신 받은 정보가 없으므로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가액 수정 필요

  ㉡ 증권 항목의 비상장주식, 국·공채 등 채권, 채무 항목의 금융 외 채무

  → 금융정보 일괄반영이 불가하므로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가액 수정 필요

  ㉢ 가상자산 중 일평균가액이 없거나 국내 5대거래소가 아닌 경우

  → 가격산정근거에 따른 가격 등 소유 여부 확인하여 직접 가액 수정 필요

금융정보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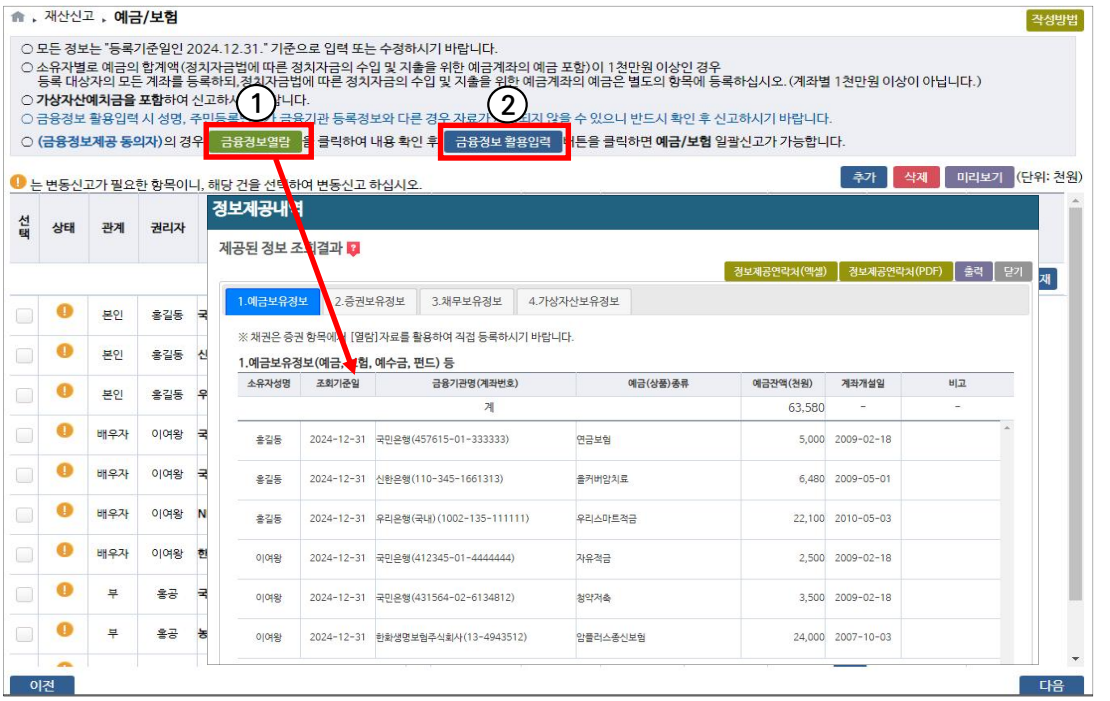

- **금융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① 금융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 정기변동신고서 작성 시 1.15.~1.20.까지 사전 검증 기간으로, 의무자는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열람하여 자료의 누락, 오회신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연락처(엑셀) 정보제공연락처(PDF) 를 통해 회신기관에 직접 오류사항 수정 요청하여야 함

- 1.24. 09:00부터 ② 금융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 가상자산 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특히, 증권 항목의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과 비상장주식은 금융정보 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니, 증권 항목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금융정보 활용입력 방법

재산신고 ▸ 예금/보험 ▸ 금융정보활용입력

금융정보활용입력(예금/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화면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신정보와 신고내용을 비교 확인하고 일괄저장 버튼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자료는 금융기관에서 회신하지 않은 계좌로
①이미 신고 되어 있거나 해약된 계좌는 현재가액을 '0'인 상태로 유지하고, ②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입력 후 저장합니다.
○중복 신고계좌는 이전 신고 시 여러 건으로 나뉘어 등록되었던 동일계좌를 한 계좌로 통합 신고하기 위해 0원 처리됩니다.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은 증권 항목에서 [열람]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예치금은 5대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보유분에 한하여 제공되며 그 외에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하셔야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회신받은 자료를 이전에 신고한 자료와 비교한 계좌 (13건) 미리보기

관계	소유자	예탁기관(계좌번호)	예탁종류	종전가액(천원)	현재가액(천원)	증가액(천원)	감소액(천원)	비고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	연금보험	① 0	5,000	5,000	0	
본인	홍길동	국민은행 (457615-01-333333-2)	연금보험	5,500	0	0	5,500	
본인	홍길동	신한은행 (110-345-1661313)	올커버암치료	8,000	6,480	0	1,520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	우리스마트적금	0	22,100	22,100	0	
본인	홍길동	우리은행(국내) (1002-135-111111-1)	우리스마트적금	10,000	0	0	10,000	③
배우자	이여왕	NH투자증권 (234-409-135435-2)	CMA	1,000	0	0	1,00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	자유적금	0	2,500	2,500	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12345-01-4444444-1)	자유적금	2,800	0	0	2,800	
배우자	이여왕	국민은행 (431564-02-6134812)	청약저축	2,600	3,500	900	0	
배우자	이여왕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3-4943512)	암플러스종신보험	26,000	② 24,000	0	2,000	
부	홍공	국민은행 (453254-01-1478712)	자유적금	9,900	0	0	9,900	

④ 일괄저장 변동취소

- ① '종전가액'란이 '0'원인 계좌는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회신된 계좌
- ② '현재가액'란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이 표시
  - 등록기준일자의 '현재가액'란에 표시된 금액이 실제 보유금액과 다를 경우 '일괄저장' 이후 목록에서 해당항목을 직접 클릭하여 '현재가액'(증권은 수량, 현재가액)을 수정
- ③ 붉은색으로 표시된 계좌는 종전에 신고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임 (해약된 계좌, 기존 신고계좌와 정보 불일치, 금융기관 회신오류 등)
  - 일괄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가액'란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을 확인한 후, 현재 보유 중이지만 회신 받지 못한 계좌라면 '현재가액' 직접 입력
- ④ **변동취소** 클릭 시 자료가 초기화(금융정보 활용입력으로 반영되기 전)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일괄저장** 클릭하여 신고 진행

예금 · 보험 개별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예금(보험)항목을 클릭하여 증감 및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예금(보험)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보험의 경우 등록기준일('24.12.31.)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변동하여 신고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보유예금을 해약했을 경우 ☐ 해약 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
-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총괄표의 예금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예금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액만 변경된 경우 "現보유액"에 기재(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목록의 우측 상단에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예탁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개설일자, 만기일자, 보유액, 특기사항을 입력
- 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관리번호-일련번호"형태로 입력
- "변동사유"란에 해당계좌의 용도기재(수입용 또는 지출용)

※ 예금 항목에 동일한 계좌가 있을 경우 중복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예금항목에 신고된 계좌는 삭제 및 해약 처리해야 함

증권 (상장주식)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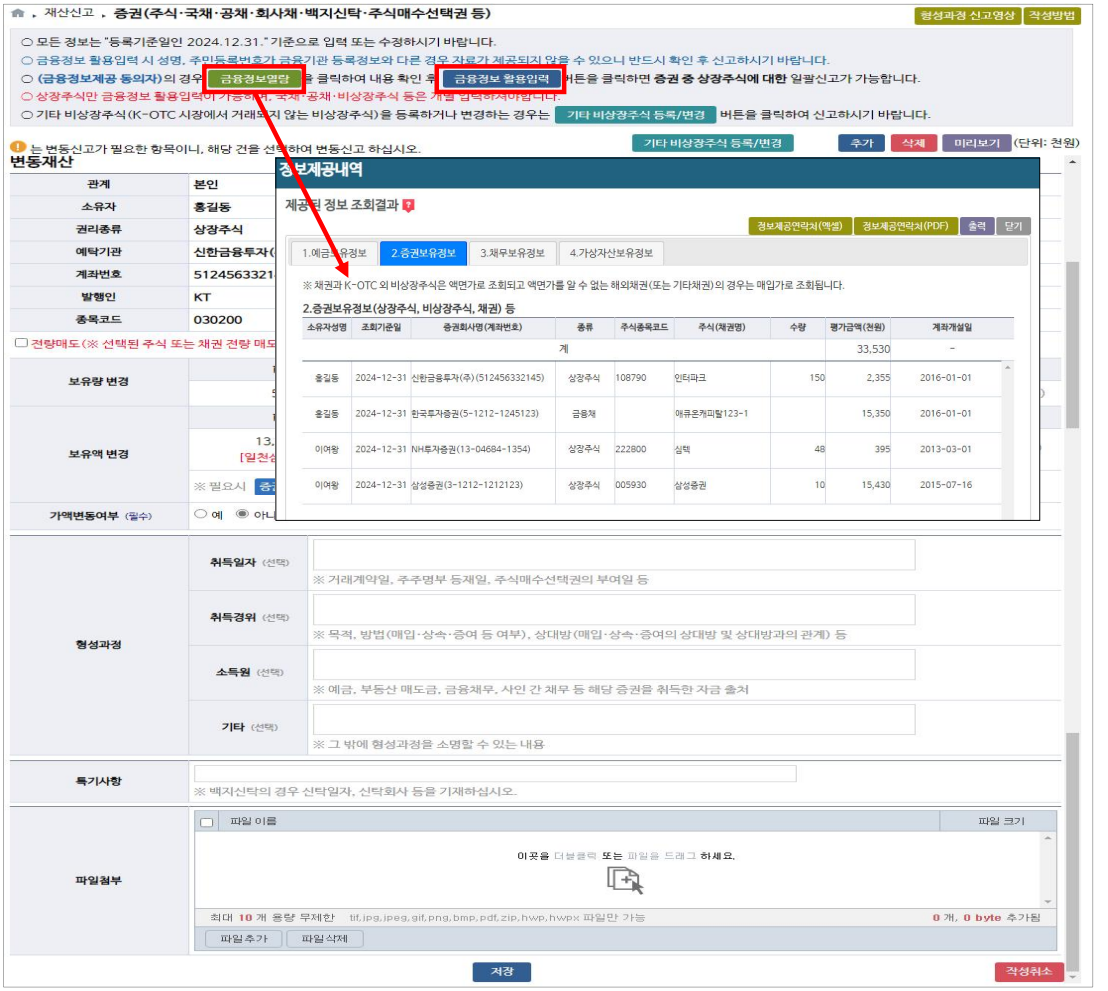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상장주식**의 경우 금융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회신자료로 일괄반영 가능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증권 항목의 채권(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 등)과 비상장주식은 금융정보활용입력이 되지 않으니, 증권 항목에서 직접 등록하여야 함

※ 상장주식만 금융정보활용입력으로 일괄 반영됨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증권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증권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상장주식의 경우 등록기준일('24.12.31.)의 최종거래가격(등록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변동신고
  - 증권 매수를 위한 예탁금, 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인 ELS, CMA, MMDA등 간접금융상품은 예금항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수량 및 "現보유액"을 입력 (증가/감소량은 자동입력 됨)

    ※ "現 보유액"란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식시세 계산" 창이 나타나고, 주당 주식시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계산 됨

  - 종전 신고한 증권의 보유수량 및 가액변동이 없는 경우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 전량매도 에 체크 후 특기사항 입력
-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않고 총괄표의 증권항목 변동사유기재 버튼을 클릭하여 증권항목의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기재

증권 (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입력방법

- **국채·공채·회사채 등은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확인이 되더라도 금융정보 활용입력 기능을 통해 일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 항목에서 개별 확인하여 신고**
  - 계좌번호와 상품(종목)명이 동일한 경우 합산하여 1건으로 신고하되, 상품(종목)명이 다른 경우 각각 신고
- K-OTC시장의 비상장주식은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에서 등록하지 않으며, [증권]에서 추가하여 권리종류를 '제3시장주식(K-OTC)'로 선택 후 "거래량가중평균가"를 신고
- 보유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신고대상임
- 필수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증권 (기타비상장주식) 입력방법
[기타비상장주식 변동신고]

- ① 법 개정에 따라 신고한 기타비상장주식 변동처리 시 [증권] 항목의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메뉴에서 기존에 신고했던 법인 클릭하여 진행

  ※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메뉴로 이동하지 않고 [증권] 항목에서 해당 기타비상장주식을 클릭할 경우 내용 수정이 불가함**

- ② '現보유량' 확인 후 **진단하기**를 통해 진단가액유형 결정
- ③ **계산하기** 클릭하여 ④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 ⑤ 이전 신고 이후 거래로 인해 수량의 변동이 있거나, 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아니오', 그 외에는 '예' 선택
- ⑥ 최종가액유형에 따라 구비서류 참고하여 첨부 후 ⑦ **저장** 클릭

  ※ **유형별 상세 내용은 다음 〈기타비상장주식 유형별 신규 등록 방법〉 참고**

[기타비상장주식 유형별 신규 등록 방법]

- 기타 비상장주식 등록/변경 클릭하여 기타비상장주식 등록화면으로 이동
- ① 기타 비상장주식 추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확인
  - 기업정보확인서 :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법인의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서식을 내려 받아 법인에게 요청
  - 신고 영상 : 기타 비상장주식의 상황별 신고방법을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 구비서류 : 최종가액유형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파일 첨부

최종가액유형	구비서류
실거래가격	국세 과세신고자료
평가액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해당 기업에서 기업정보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재무제표
액면가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기업이 회계정보제공 거부 등) → 관련 소명자료 실거래가격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국세 과세신고자료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으나 액면가가 더 높은 경우 → 재무제표 또는 기업정보확인서

- ② 추가 클릭하여 나오는 추가 화면에서 법인 기본정보 먼저 입력 후 저장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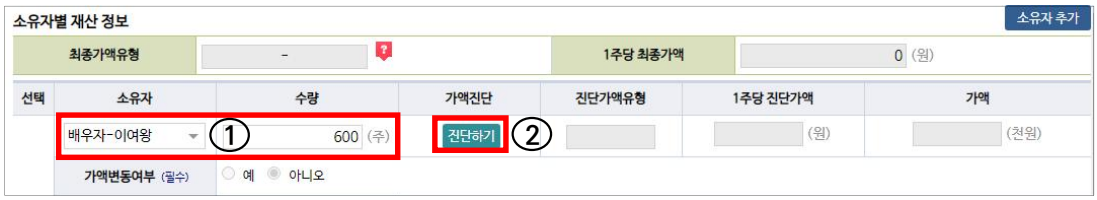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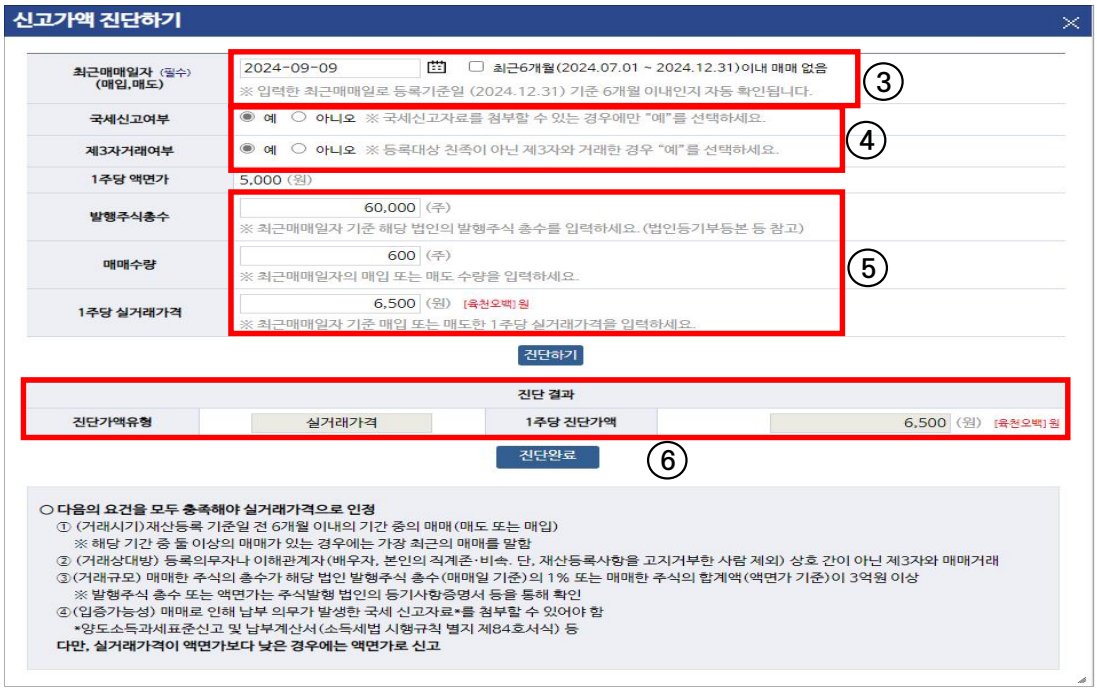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를 한 경우 최근 매매일자 선택
- ④ 국세신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가 아닌 제 3자와 거래한 경우 '예' 선택
- ⑤ 최근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 총수와 매매한 수량,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거래가격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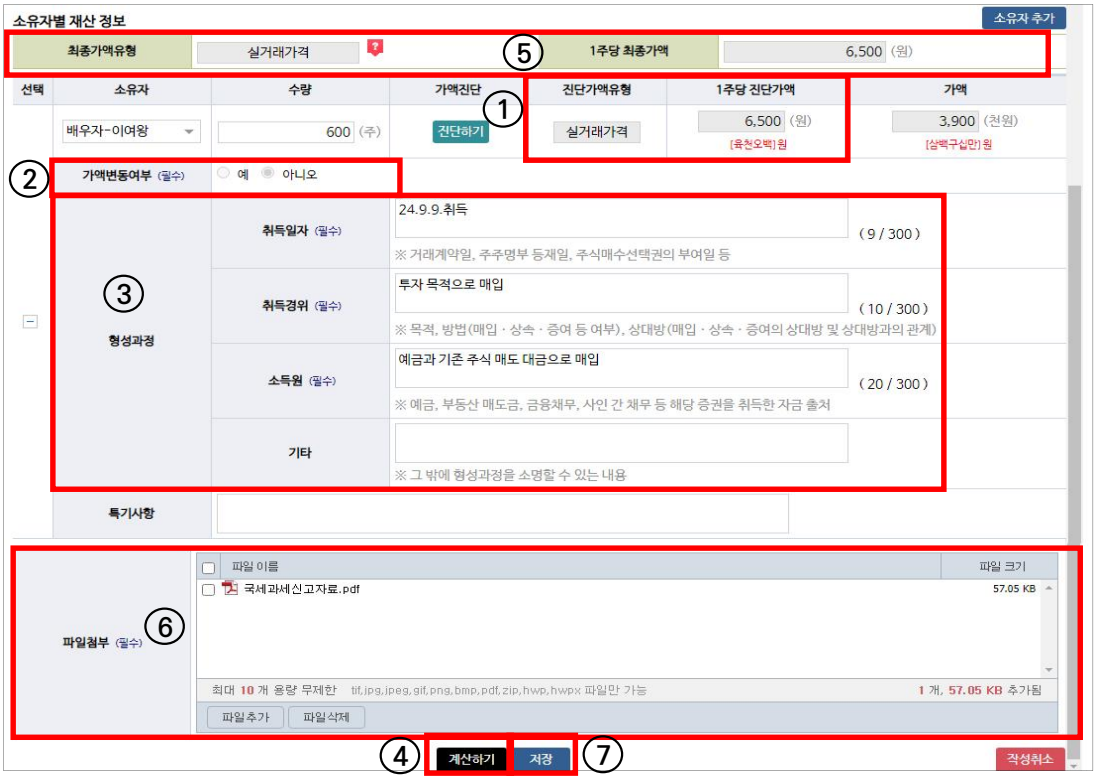

- ① 진단하기를 통해 실거래가격 인정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진단가액유형은 실거래가격, 1주당 진단가액은 실거래가격으로 산정됨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기 때문에 '평가액 계산하기' 진행하지 않고, 본인이 입력한 1주당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됨**
- ⑤ 진단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고, 액면가보다 실거래가격이 높기 때문에 최종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으로 표시
- ⑥ 최종가액유형이 실거래가격이므로 국세과세신고자료 첨부
- ⑦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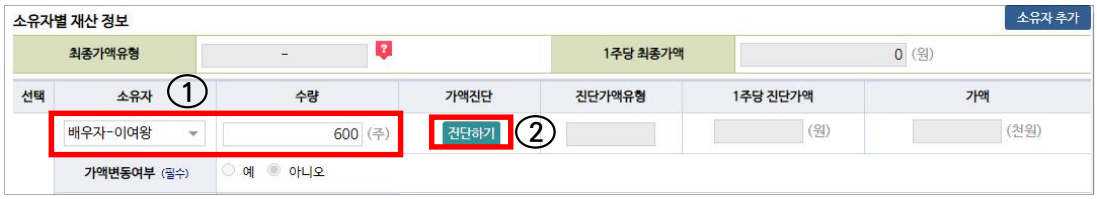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 여부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없음'에 체크
  -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④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선택
  -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⑤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최근 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총수, 최근 매매수량, 최근 매매한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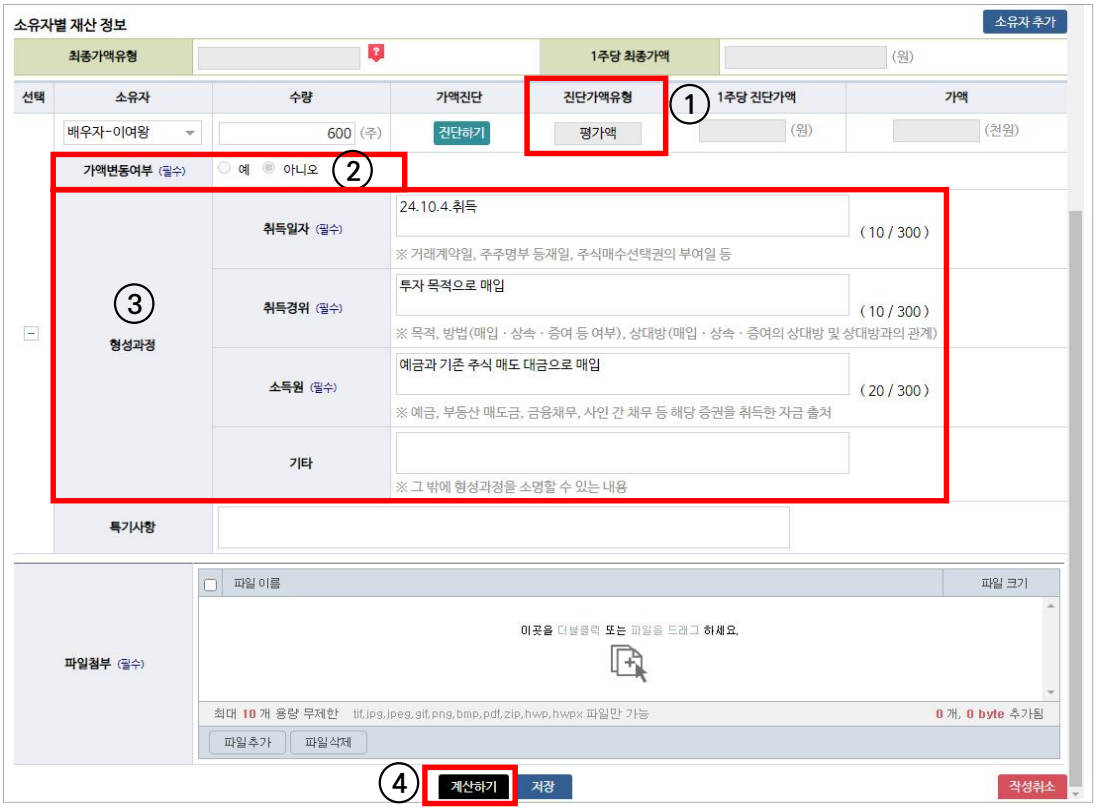

- ① 진단을 통해 결정된 유형 표시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 ① 평가액 계산 전 3가지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여 진행
  -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체크할 경우 관련 소명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이 생성되며, 기업 재무정보가 모두 비활성화 되고,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 시 1주당 평가액은 액면가로 계산됨
  -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연도 ~ 1주당 당기순이익이 비활성화되어 나머지 기본정보만 입력하여 평가액 계산
- ② 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입력 시 순자산가액이 자동 계산되며, 단위 착오 없이 기재
- ③ 해당 법인의 최근, 직전, 직전전 사업연도를 중복되지 않게 입력하고, 그에 맞는 ④ 당기순이익과 발행주식 총수 입력하여 1주당 당기순이익 자동 계산
- ⑤ 모든 항목 입력 후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되며, **계산완료** 클릭하여 팝업으로 안내되는 구비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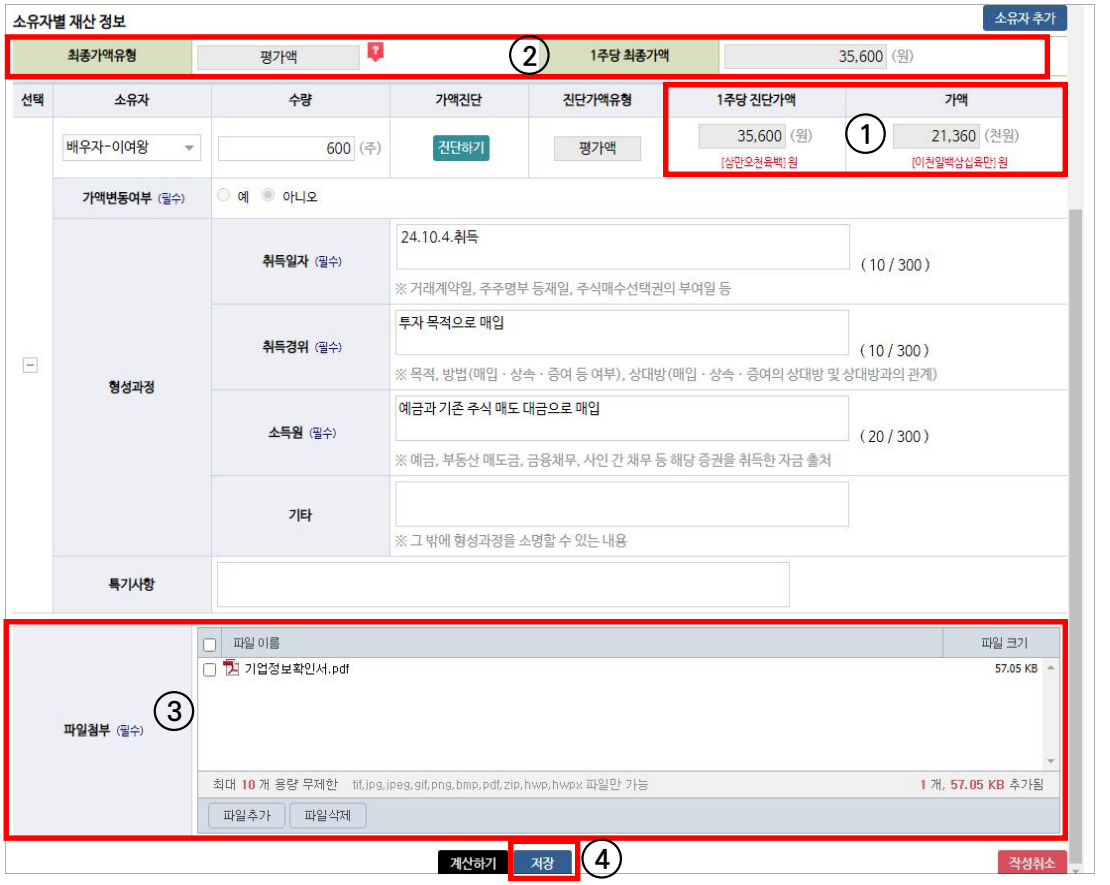

- ① '평가액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된 1주당 진단가액과 가액(1주당 최종가액 ×수량)이 표시됨
- ② 진단가액유형이 평가액이고, 액면가보다 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최종가액 유형이 평가액으로 표시됨
- ③ 최종가액유형이 평가액이므로 기업정보확인서 또는 재무제표 첨부
- ④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액면가)〉

- ① 소유자와 현재 보유 중인 수량 입력
  - 동일한 비상장주식을 등록대상 중 2명 이상 보유한 경우 소유자 추가 클릭하여 등록
- ② 진단하기 클릭하여 기타 비상장주식 신고를 위한 가액유형 진단

- ③ 등록기준일 이전 6개월 이내 매매여부에 따라 정확한 날짜를 선택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매매 없음'에 체크
  - **매매 없음에 체크 시 다음 항목 입력 없이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④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선택
  - **두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아니오'에 체크될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됨**
- ⑤ 국세신고여부와 제3자 거래여부를 '예'로 체크한 경우에만 활성화되며, 최근 매매일자 기준 발행주식총수, 최근 매매수량, 최근 매매한 1주당 실거래가격 입력
  - **입력된 매매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인 경우 평가액으로 진단**
- ⑥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하기 클릭하면 진단 결과가 표시되며, 진단 결과 확인 후 진단완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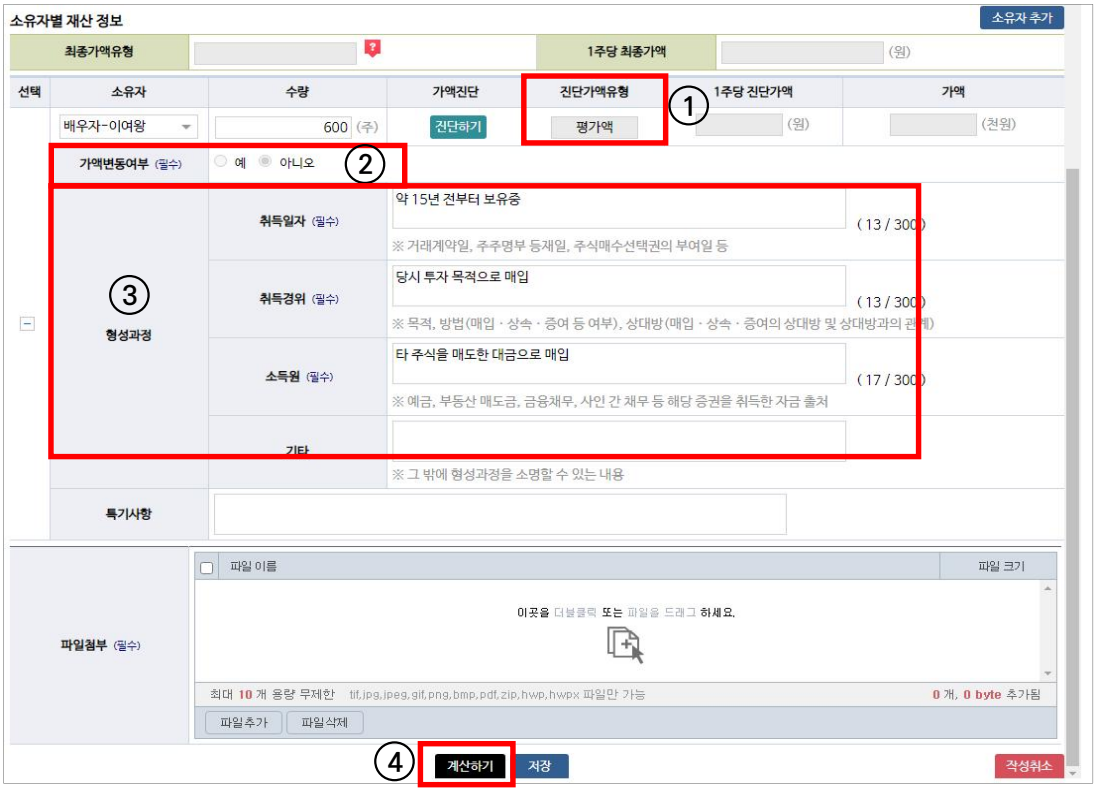

- ① 진단을 통해 결정된 유형 표시
- ② 비상장주식 신규 추가 시 가액변동여부는 '아니오'로 선택됨
- ③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을 필수 입력
- ④ **계산하기** 클릭하여 최종가액유형 및 1주당 최종가액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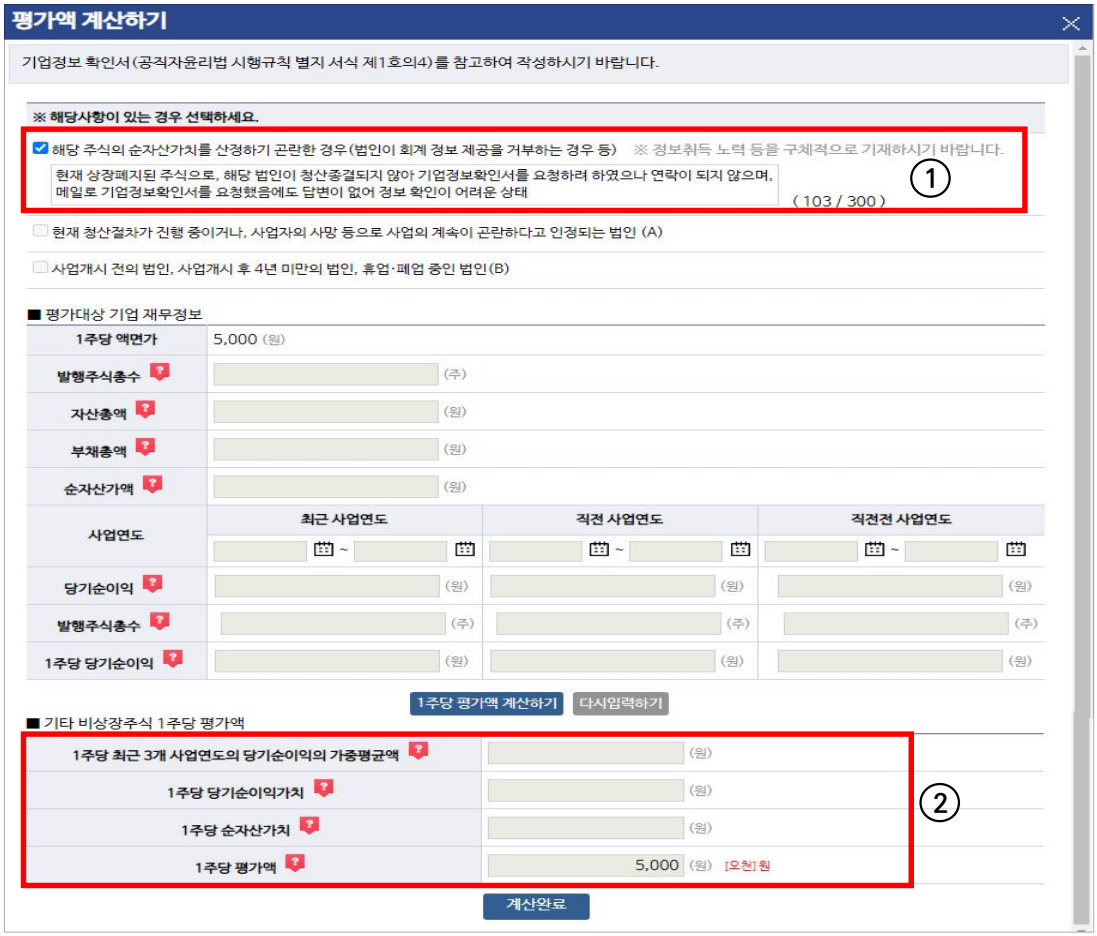

- ①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법인이 회계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체크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하고, 해당 사유에 체크할 경우 평가대상 기업 재무정보는 모두 비활성화됨
- ② 1주당 평가액 계산하기 클릭 시 법인 기본정보에 입력한 1주당 액면가로 최종 1주당 평가액이 계산되며, 계산완료 클릭하여 팝업으로 안내되는 구비서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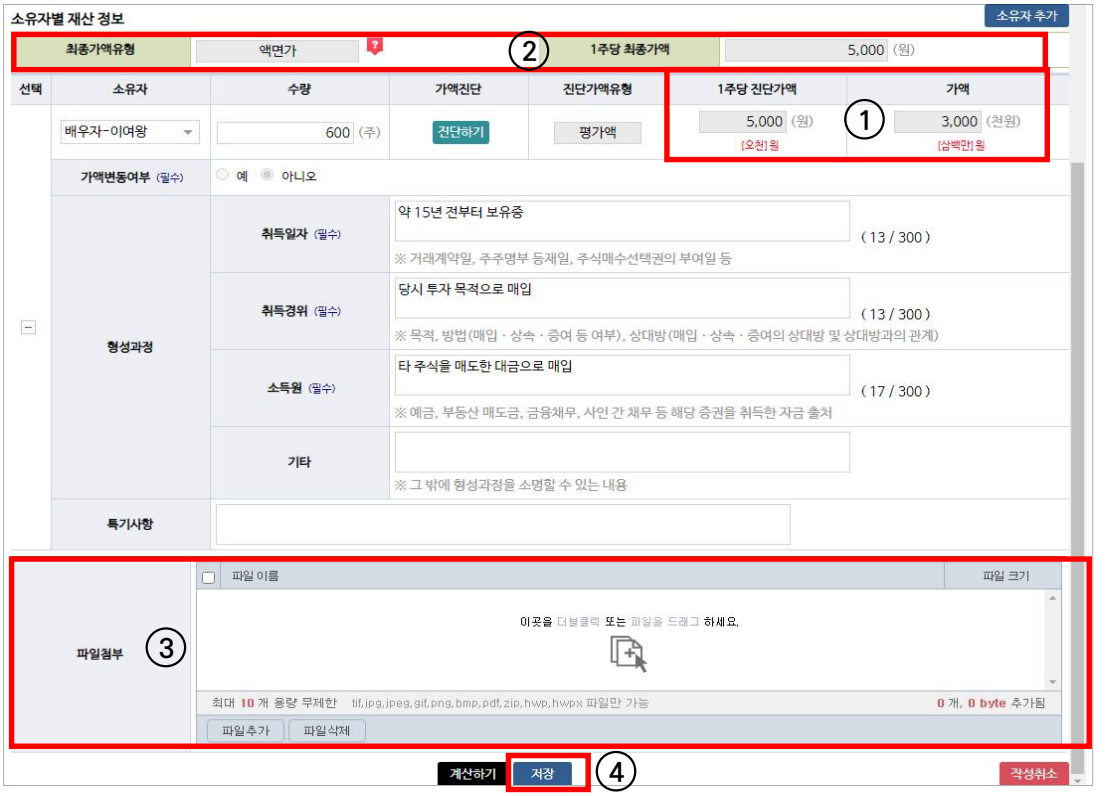

- ① '평가액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된 1주당 진단가액과 가액(1주당 최종가액 ×수량)이 표시됨
- ② '평가액 계산하기'에서 '해당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체크하여 진행했기 때문에 최종가액유형이 액면가로 표시됨
- ③ 최종가액유형이 액면가이므로 기업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일자·방법 등 요청내역, 제출 거부 사유 등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

  ※ 해당 사유인 경우 첨부파일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사항임
- ④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기타비상장주식 전량매도]

- ① 보유하고 있던 기타 비상장주식을 전량 매도한 경우 ☑ 전량매도 체크 시 '現보유량'과 '現보유액'이 '0'으로 변동됨
- ② 공개대상자의 경우 형성과정의 상실일자, 상실경위, 사용처를 필수 입력
- ③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클릭

※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 일부 소유자만 전량매도하고 나머지 소유자는 아직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의 최종가액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량매도한 대상자도 진단하기를 통해 가액진단해야 함

주식거래내역 신고(공개자)

- 재산공개대상자는 한국거래소 상장주식 및 장외거래 주식에 대해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주식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기간)** '24.1.1.부터('24년도에 최초 재산신고시 그 이후부터) 12.31.까지의 거래내역
  ※ '23.10.1.~'23.12.31. 중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그 등록기준일자로부터 '24.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위탁계좌번호, 주식 거래일, 종목, 수량, 실거래액 등이 기재된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위탁계좌원장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증권 메뉴 또는 총괄표 목록 [주식거래내역신고] 버튼을 통해 작성 후 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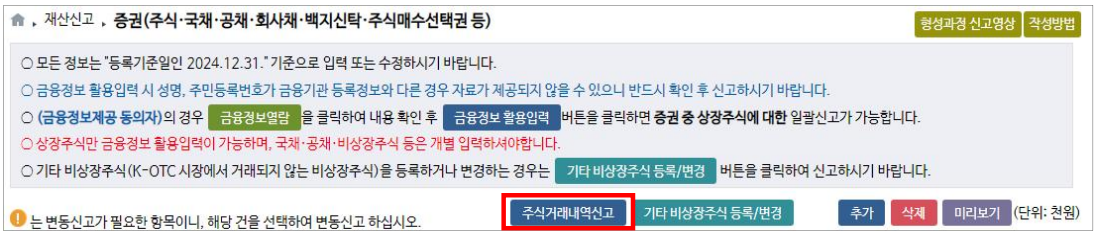

채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권을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채권자, 채권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채무자, 채무자주소, 전화번호, 변동사유를 입력

    ※ 타인의 주택, 상가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토지·건물) 항목에 전세권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채권을 전액환수했을 경우 ☐ 전액환수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채무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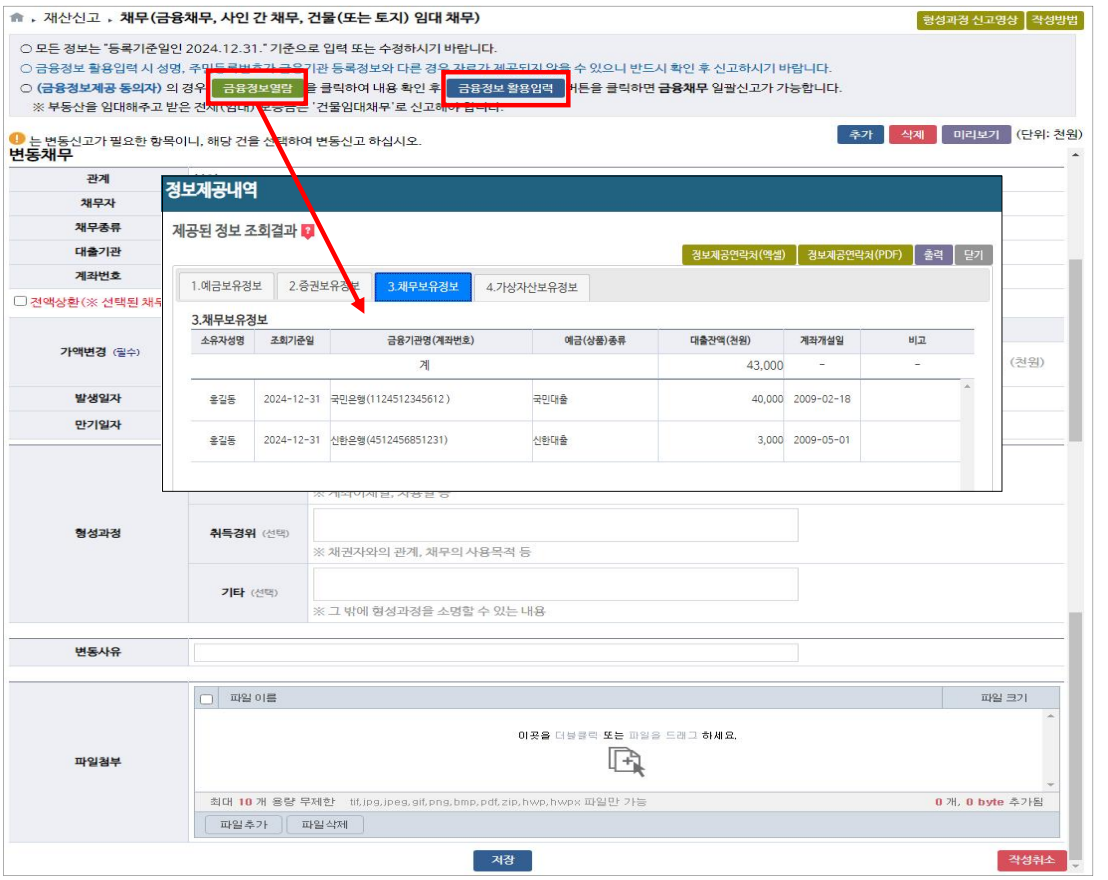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신고
-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정보열람 을 통해 제공받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금융채무**의 경우 금융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제공받은 회신자료로 일괄반영 가능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금융정보활용입력은 예금·보험, 증권, 채무항목에서 각각 진행해야 함
- 금융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채무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종전 신고한 채무항목에 대해 채무액이 변경된 경우 "現채무액"에 기재 (증가/감소액은 자동입력됨)
  - 추가 할 경우 채무자, 채무종류, 채무액, 발생일자, 만기일자, 변동사유를 입력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먼저 건물항목에 소유권으로 등록한 뒤 보증금은 채무 종류 '건물임대채무' 선택하여 등록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경우 채무는 등록하지 않음)**
- 부모-자녀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한 채무도 사인간 채무로 신고

  ※ **(예시)** 등록의무자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준 경우 등록의무자는 사인간 채권, 자녀는 사인간 채무로 각각 신고
- 보유채무를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 전액상환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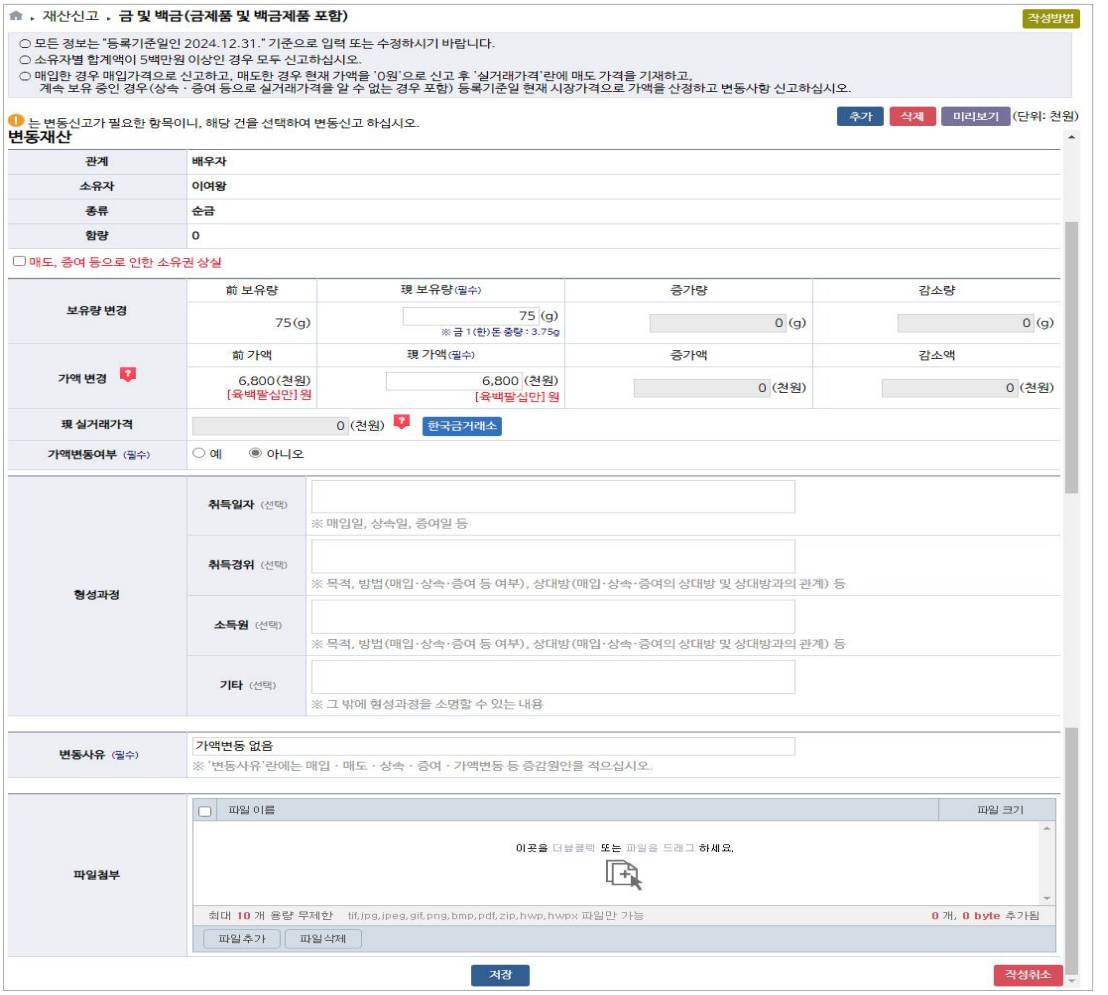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금·백금),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가액은 감정가 등 시장거래 금액으로 산정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보유량의 증감 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도 등록기준일의 금 시세를 조회하여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보석류 입력방법

-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다이아몬드 등), 함량, 보유량, 실거래액,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골동품 및 예술품 입력방법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도자기, 회화 등) 품명, 크기, 작가, 제작연대, 실거래가격, 변동사유를 입력
    ※ 매입한 경우 매입가격으로 신고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가액을 그대로 유지
- 보유재산을 매도한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회원권 입력방법

- '회원권 정보제공'에 동의한 등록의무자는 회원권정보열람을 클릭하여 회원권 소유 정보 확인 가능

※ 회원권정보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므로 등록기준일의 보유정보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준일자의 보유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소유자,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가액, 변동사유를 입력

    ※ 골프회원권 가액 신고 방법
  - 신규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매입가격)으로 신고하되, 상속·증여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으로 신고
  - 이전 신고 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높은 금액 신고(이전 신고 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신고)

    ※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 이택스(ETAX) 또는 회원권 소재지 지자체에 문의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골프회원권은 등록기준일의 가액을 확인하여 가액증감분 신고하고, 변동이 없을 시에는 "가액변동여부"를 "아니오"로 체크하여 신고**

  ※ "가액변동여부"는 회원권의 종류가 "골프"인 경우에만 나타남
- **콘도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건물이 아닌 회원권으로 신고**
- 보유회원권을 매도했을 경우 ☐ 매도,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지식재산권 입력방법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소유자, 종류, 권리명세, 소득금액,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지식재산권이 소멸된 경우 ☐ 매도, 존속기간만료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출자지분 입력방법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자자,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영업종류, 설립일, 자본금, 출자지분, 출자가액, 회사연간 매출액,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출자한 지분이 소멸된 경우 ☐ 출자지분 회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 출자지분 회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 에 체크하고 신규로 다시 신고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입력방법

- 신규재산을 등록할 경우 총괄표에서 **추가** 버튼 클릭
  - 출연자, 출연재산, 보유직위, 법인명칭,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변동사유를 입력
- 종전 신고한 재산항목을 변동처리할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여 변동사항 입력
- 출연재산이 소멸된 경우 ☐ 소멸에 체크 후 변동사유 입력
- 변동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가상자산정보 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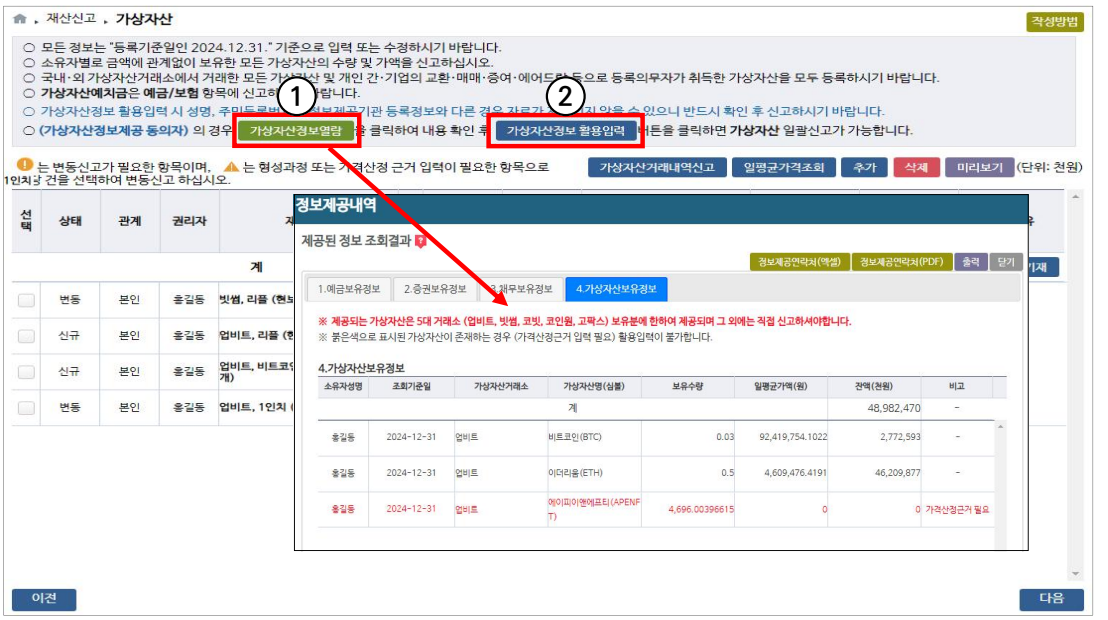

- **가상자산정보제공 동의자의 경우 ① 가상자산정보열람 을 클릭하여 아래 화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

  ※ 정기변동신고서 작성 시 1.15.~1.20.까지 사전 검증 기간으로, 의무자는 제공받은 가상자산정보를 열람하여 자료의 누락, 오회신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제공연락처(엑셀) 정보제공연락처(PDF) 를 통해 회신기관에 직접 오류사항 수정 요청하여야 함

- 1.24. 09:00부터 ② 가상자산정보 활용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 변경 및 신규 추가

  ※ 본 기능은 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편의를 위한 선택사항으로 재산신고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본인 책임하에 신고하여야 함

  ※ 가상자산정보활용입력은 국내 5대거래소의 정보만 가능하므로 그 외 거래소의 보유정보는 직접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

가상자산 활용입력 방법

- ①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은 종전에 신고하였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회신되지 않은 계좌임 (전량 매도한 항목, 기존 신고 정보와 불일치, 회신오류 등)
  - 일괄변동 처리를 위해 시스템에서 현재수량 및 가액이 '0'으로 표시되어 나타나므로 목록을 확인한 후, 현재 보유 중이지만 회신받지 못한 경우 직접 내용 입력
- ②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이 없는 경우 가격산정근거 선택 후 가격 직접 입력
  - 가상자산 일평균가액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입력되며, 가상자산 목록의 **일평균가격조회** 클릭하여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확인 가능
- ③ **변동취소** 클릭 시 자료가 초기화(가상자산 활용입력으로 반영되기 전)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일괄저장** 클릭하여 신고 진행

가상자산 개별 입력방법

- 금액에 관계없이 가상자산 보유 수량이 있는 경우 신고
- 가상자산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가상자산 항목을 클릭하여 증감 및 변동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가상자산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거래소명, 가상자산명, 심볼, 종목코드, 가격, 수량 등 입력
  - 가상자산 예치금은 '가상자산'이 아닌 '예금/보험' 항목으로 신고

- 등록기준일 기준 해당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
  - 일평균가격은 등록기준일의 다음달 15일 이후부터 확인 가능
  - 수량 입력 시 가상자산의 수량에 가격을 곱한 총 금액이 계산되어 가액에 입력됨
    ※ 공직윤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 공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을 입력
    ※ 기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일평균가격으로 신고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종시세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으로 입력
- 공개자는 형성과정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항목이 필수사항이며, 비공개자는 형성과정 항목이 선택사항임
- 일평균가격조회 클릭하여 가상자산의 거래소별 일평균가격 조회 가능

가상자산 예치금 입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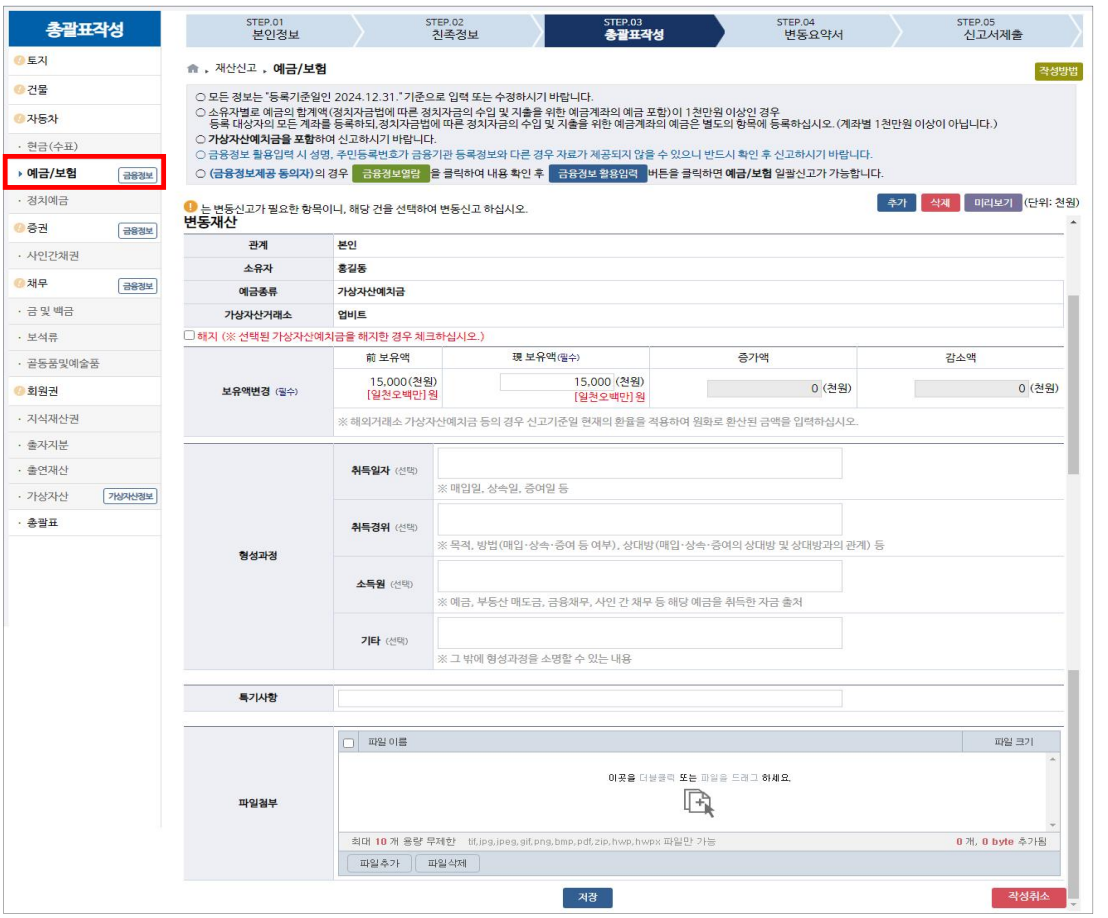

- 가상자산 예치금은 '예금/보험' 항목에 신고
- 가상자산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종전 신고한 가상자산예치금 항목을 클릭하여 증감 및 변동 사항을 입력하고 신규 가상자산예치금의 경우 추가 버튼 클릭하여 등록
  - 예금종류를 '가상자산예치금'으로 선택하여 거래소명, 가액 입력
  - 금액에 상관없이 예치금을 천원단위로 입력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공개자)

- 재산공개대상자는 국내·외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내역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방법

- **(신고대상기간)** '24년 중 발생한 거래내역
  ※ '24.1.1. 이후 공개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준일로부터 '24.12.31.까지의 거래내역
- **(신고방법)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하는 고객명, 계좌번호, 조회기간,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등이 기재된 가상자산거래내역확인서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신고(영 제5의2제3항)**
  ※ 국외거래소 등과 같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거래내역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거래내역을 신고

- 가상자산 메뉴 또는 총괄표 목록 가상자산거래내역신고 버튼을 통해 작성 후 저장

신고내역 검증

재산신고 ▸ 신고내역 검증

총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모든 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을경우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페이지 내용을 출력하시고자 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메뉴 중 「파일」 인쇄 미리보기」에서 "페이지에 맞게 축소"를 선택하여 화면조절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친족별 동의·신고가액 현황입니다.

관계	성명	정보제공 동의현황					종전가액	변동액		현재가액(천원)
		금융	부동산	가상자산	자동차	회원권		증가	감소	
본인	홍길동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323,880	2,782	289	326,373
배우자	이배우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385,268	47,427	8,750	423,945
부	부친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8,844	371	0	9,215
모	모친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21,551	600	2,151	20,000
장남	장남	동의	동의	동의	동의	동의	6,213	0	3,213	3,000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셨나요? 수정

※ 고지거부 재심사 미신청자 내역입니다.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고지거부신청일	고지거부적용시작일	고지거부적용종료일
차남	김차남	2023-01-19	2022-12-31	2025-12-30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 신고건수와 회신건수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잘못 신고한 것은 아니며,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정보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재산항목	신고내용	회신내용	조회	열람일시	활용입력일시
부동산	토지	2 건	2 건	확인	2025-03-15 13:45:28	
	건물	4 건	3 건	확인	2025-02-15 13:47:51	
금융	예금/보험	4 건(56,800천원)	6 건 (60,350천원)	확인	2025-02-15 20:55:13	2025-02-15 19:23:10
	증권	2 건(30,780천원)	2 건 (30.780천원)	확인	2025-02-15 19:25:23	2025-02-15 19:23:10
	채무	1 건(10,000천원)	1 건 (10.000천원)	확인	2025-02-15 20:59:59	2025-02-15 19:23:10
가상자산		2 건(155천원)	3 건(155천원)	확인	2025-02-15 17:41:11	2025-02-15 17:42:39
자동차		2 건	2 건	확인	2025-02-15 18:00:10	
회원권		0 건(0천원)	0 건(0천원)	확인	2025-02-15 18:09:40	

① 확인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수정

※ 아래 주소지가 총괄표(건물)에 신고되어있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재산인 경우 건물재산(소유권, 전세권)을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관사, 기숙사, 친척집 등) 친족사항의 거주형태란에 거주형태를 정확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거주형태	관계	성명	변동사유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 569번지 대명강변타운아파트 1동 101호	자가	본인	홍길동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 아래 주소지가 채무항목 건물임대채무로 신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유중인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이 있는경우 이를 채무항목에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임대나 공실, 본인 사용 등인 경우 해당 건물의 비고, 변동사유란에 '○○○에게 무상임대', '공실', '본인사무실' 등 사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성명	권리종류	주소	변동사유
본인	홍길동	소유권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855번지 도램마을9단지 9동 909호	-
배우자	배우자	소유권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626번지 개나리아파트 101동 101호	가액변동 없음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를 신고한건 아닌가요? 수정

※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는 '전액상환'하셔야 합니다.

혹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 공개자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계	성명	재산항목	가액(천원)
본인	홍길동	신한금융투자(주), 공직건설 (현보유량: 5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6,540
배우자	배우자	윤리물산 (현보유량: 400주), 특기사항(가액변동)	14,240
계			30,780

이전 다음

- 신고한 내용을 시스템 상에서 비교하여 사전 점검하는 기능

※ 이 화면의 검증 내용은 단순착오 및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으로 점검한 내용으로 등록의무자가 반드시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다음 단계로 이동

Q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을 하셨나요?

A
- 고지거부 만료일이 2025.12.30.까지인 대상자로서 고지거부 허가 연장을 위한 재심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표시되며, 2025.3.31.까지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가능

Q 제공된 부동산·금융정보 중 누락 또는 중복 신고된 항목이 있나요?

A
- 신고한 내용과 회신받은 내용을 비교하여 부동산은 건수, 금융 등은 건수와 총액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함

  ※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 분양권 등 회신되지 않는 항목과, 금융의 경우 0원으로 신고된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상 없을 경우 다음 진행
- 부동산, 금융정보 등의 열람일시가 표기되며, 금융·가상자산의 경우 활용입력 일시도 표기됨

  ※ 열람 또는 활용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공란으로 표기

  - ① 확인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자료와 조회자료 목록을 비교할 수 있음

재산항목 열람 - 토지

○ 신고자료 목록 (4건)

상태	관계	권리자	재산항목	권리종류
변동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0.00㎡ (5,000.00㎡ 감소)	소유권
신규	본인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9번지 250.00㎡ (250.00㎡ 증가)	소유권
신규	본인	홍길동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373-3번지 300.00㎡ (300.00㎡ 증가)	소유권
신규	장남	홍익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 (500.00㎡ 증가)	소유권

○ 조회자료 목록 (3건)

소유자성명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자수
홍길동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9번지		250.00	
홍길동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1373-3번지		300.00	
홍익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10번지		500.00	

닫기

Q 본인 및 친족이 거주중인 건물을 신고 했나요?

A
- 본인 또는 친족정보 입력 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입력했으나 '건물'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등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누락이 맞는 경우 총괄표 '건물'로 이동하여 추가하고, 관사·기숙사·친척집 거주,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일 경우 추가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Q 타인에게 임대중인 건물이 있나요?

A
- '건물'에 신고된 항목 중 등록의무자 또는 친족이 거주하는 주소가 아니며, '채무' 항목의 '건물임대채무'도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해당 건물을 임대중인 경우에는 '채무'항목으로 추가하고, 해당 건물이 공실이거나 무상임대, 본인사용 등인 경우 '건물'항목에서 해당건물의 '비고', '변동사유'에 기재
- 거주지 주소체계(도로명주소)와 소재지 주소체계(지번주소)의 법정동, 행정동 표기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이상 없을 시 다음으로 진행

Q 매도한 건물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건 아닌가요?

A
- '채무'에 토지임대채무 및 건물임대채무로 신고한 주소가 '토지' 또는 '건물'에 신고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나타남
  -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 '채무'항목에서 해당 임대채무를 ☐ 전액상환 하고,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 또는 '건물' 항목에 부동산 소유권 추가하여 등록

Q 혹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 해당되나요?

A
- 재산 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관련부서 및 금융위원회 4급 이상이 해당하며,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진행해야 함(9쪽 참고)

3-6. 변동요약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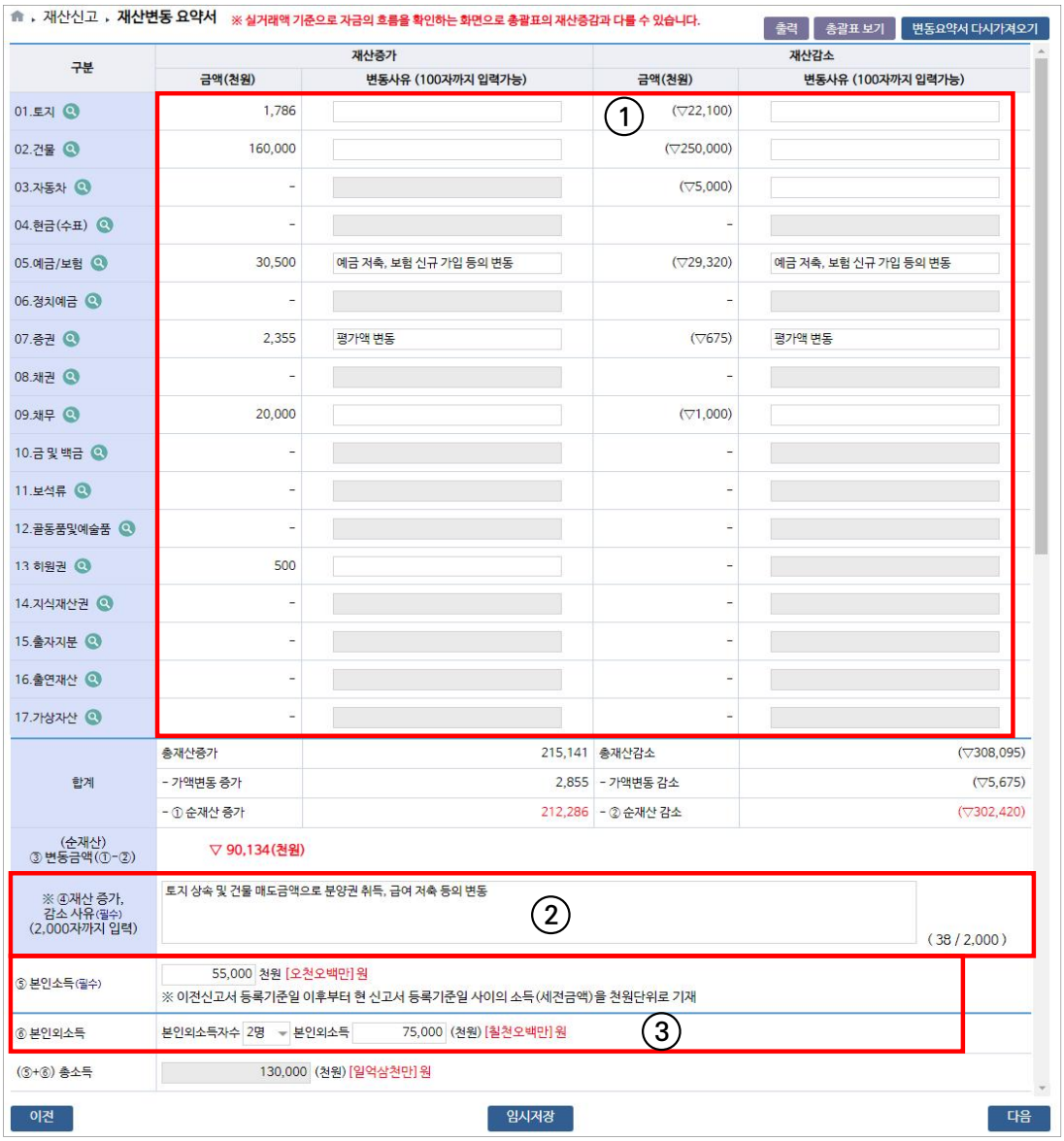

재산신고 ▸ 재산변동 요약서 ※ 실거래액 기준으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하는 화면으로 총괄표의 재산증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력 | 총괄표 보기 | 변동요약서 다시가져오기

구분	재산증가		재산감소	
	금액(천원)	변동사유 (100자까지 입력가능)	금액(천원)	변동사유 (100자까지 입력가능)
01.토지	1,786		(▽22,100)	
02.건물	160,000		(▽250,000)	
03.자동차	-		(▽5,000)	
04.현금(수표)	-		-	
05.예금/보험	30,500	예금 저축, 보험 신규 가입 등의 변동	(▽29,320)	예금 저축, 보험 신규 가입 등의 변동
06.정치예금	-		-	
07.증권	2,355	평가액 변동	(▽675)	평가액 변동
08.채권	-		-	
09.채무	20,000		(▽1,000)	
10.금 및 백금	-		-	
11.보석류	-		-	
12.골동품및예술품	-		-	
13.회원권	500		-	
14.지식재산권	-		-	
15.출자지분	-		-	
16.출연재산	-		-	
17.가상자산	-		-	
합계	총재산증가	215,141	총재산감소	(▽308,095)
	- 가액변동 증가	2,855	- 가액변동 감소	(▽5,675)
	- ① 순재산 증가	212,286	- ② 순재산 감소	(▽302,420)
(순재산) ③ 변동금액(①-②)	▽ 90,134(천원)			
※ ④재산 증가, 감소 사유(필수) (2,000자까지 입력)	토지 상속 및 건물 매도금액으로 분양권 취득, 급여 저축 등의 변동 ② (38 / 2,000)			
⑤ 본인소득(필수)	55,000 천원 [오천오백만] 원 ※ 이전신고서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기준일 사이의 소득(세전금액)을 천원단위로 기재			
⑥ 본인외소득	본인외소득자수 2명 본인외소득 75,000 (천원) [칠천오백만] 원 ③			
(⑤+⑥) 총소득	130,000 (천원) [일억삼천만] 원			

이전 | 임시저장 | 다음

- 총괄표에 입력한 내용을 토대로 생성된 변동요약서의 항목별 변동금액을 확인

  ※ 총괄표(가액으로 계산)와 변동요약서(실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계산)의 순증감액은 서로 다를 수 있음

- ① 재산증가, 재산감소의 "변동사유"란에 변동사유내용 입력
- ② 재산의 증가와 감소 사유, 총괄표에 나타나지 않는 재산의 변동사항 등을 "재산 증가, 감소사유"에 입력

- ③ 본인소득과 친족의 소득을 기재

  ※ 이전 신고서 등록기준일 이후부터 현 신고서 등록기준일 사이의 소득(세전금액)을 천원 단위로 기재하고, 임대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 변동요약서 작성 완료 후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해 내용 저장

- 모든 작업 완료 후 **다음** 버튼 클릭

  ※ 순재산 변동비율이 총소득 대비 ±70% 이상일 때 나오는 팝업으로 이상이 없다면 '예' 클릭하여 진행, 이상 있을 경우 '아니오' 클릭 후 총괄표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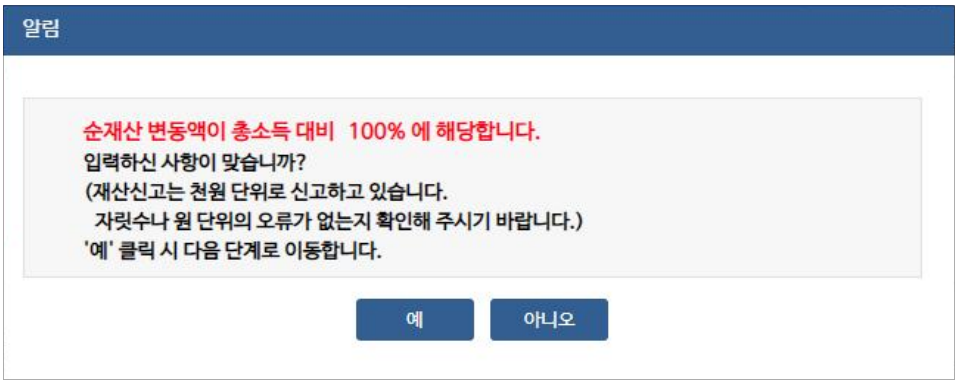

3-7. 공개목록 작성(공개자에 한함)

- ① 공개목록작성 내용 참고하여 '변동사유' 입력 후 **저장** 클릭

  ※ '변동사유'란은 모두 빈칸으로 나타나며 등록의무자가 필요한 경우 항목별 사유를 직접 기재

- ② 아파트 동·호수, 사인간 채무·채권, 건물임대채무 등에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가 표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권리명세 등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총괄표에서 해당 항목 수정하여 공개목록 다시 작성

- ③ 출력 버튼 클릭하여 공개목록 출력 가능

- 공개목록은 자동으로 생성되며 재산항목 중 채무만 전체 합계에서 '–'처리됨

- 최종적으로 공개목록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다음 **다음** 클릭

※ 공개목록은 관보, 공보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는 내용이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성

3-8. 신고서 제출 및 완료

- 재산등록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고지거부 허가신청하였으나 “심사중”인 경우 신고서 제출할 수 없음

  ※ 이런 경우에는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에게 문의

- 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신고서 제출 후 필요 시 접수증 출력

  ※ 접수증 출력하지 않아도 제출완료되며, 제출 후에도 신고서 조회에서 출력 가능
- 신고서 제출완료 후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메인화면에서도 제출 여부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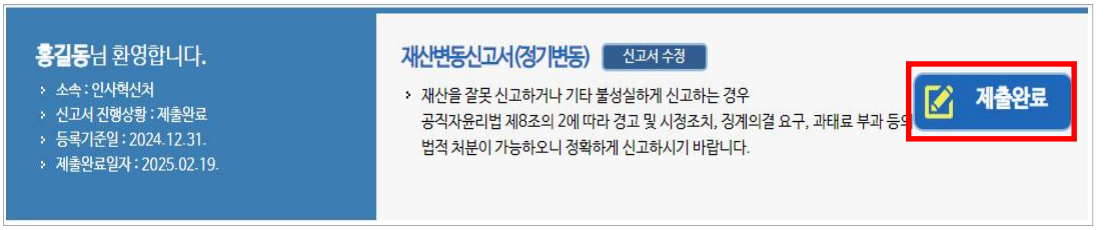

4 신고서 제출 후 조회·수정

4-1. 제출신고서 조회

- 필요한 경우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제출한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음
- 과거에 신고한 모든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접수증 출력메뉴 클릭하여 접수증 출력 가능
- 제출한 신고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신고서 상세보기메뉴 클릭하면 총괄표 화면이 나타나 세부내용 조회 가능

4-2. 신고서 수정요청 및 승인확인

- ① 신고기간 내 제출한 신고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 수정** 클릭하여 바로 수정 가능
- ② 신고기간 이후 10일 이내(3.1.~3.10.)에 신고서 수정을 원할 경우 **신고서 수정요청** 클릭한 뒤 수정요청 화면에서 요청사유 입력하여 소속기관 윤리업무담당자 승인받아 수정 가능

  ※ **신고서 수정을 한 경우 신고서 진행상황이 '작성중'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수정완료 후 반드시 3.10.까지 '신고서 제출' 완료하여야 신고서가 최종 제출처리 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4

등록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5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공개대상자 등)

5-1. 본인정보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날 등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함

  * 신고사유 발생일이 2021.6.23. 이전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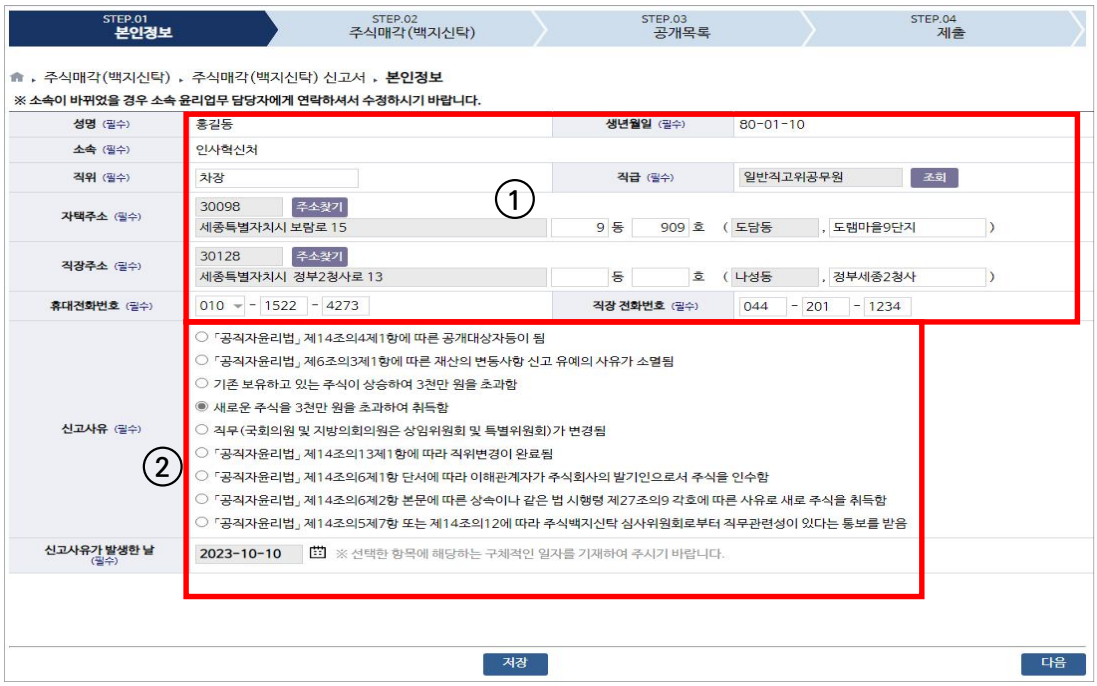

- ① 기본적으로 공직윤리시스템으로 제출했던 신고서의 본인정보 표기
- ②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사유 및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 선택

5-2. 주식매각(백지신탁)

- 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확인하기 **클릭하여 매각·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 확인**
- ② 필요한 경우 증권정보포털(SEIBro) 클릭하여 주식 종목코드 조회 가능

  ※ 증권정보포털은 인터넷망으로 공직윤리시스템(PETI) 접속한 경우에만 활용 가능
- ③ 기존신고 주식정보 가져오기 클릭하여 재산신고서에 등록한 주식정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재산신고서에 등록하지 않은 주식은 추가 클릭하여 신규 등록

  - 소유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 내용 입력 후 주식거래내역서(신탁계약서) 첨부

5-3. 공개목록

- ① 공개목록 미리보기 클릭하여 공개목록 확인 후 출력 가능
- ②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내역 확인하여 수정사항 있을 경우 이전 단계로 이동하여 수정

5-4. 지연여부 확인(지연 신고인 경우에만 진행)

- ① 지연사유서 미리보기 클릭하여 작성중인 지연사유서 확인 후 출력 가능
- ②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
- ③ STEP1 본인정보에서 선택한 신고사유별 예시 참고하여 지연 증빙서류 첨부

5-5.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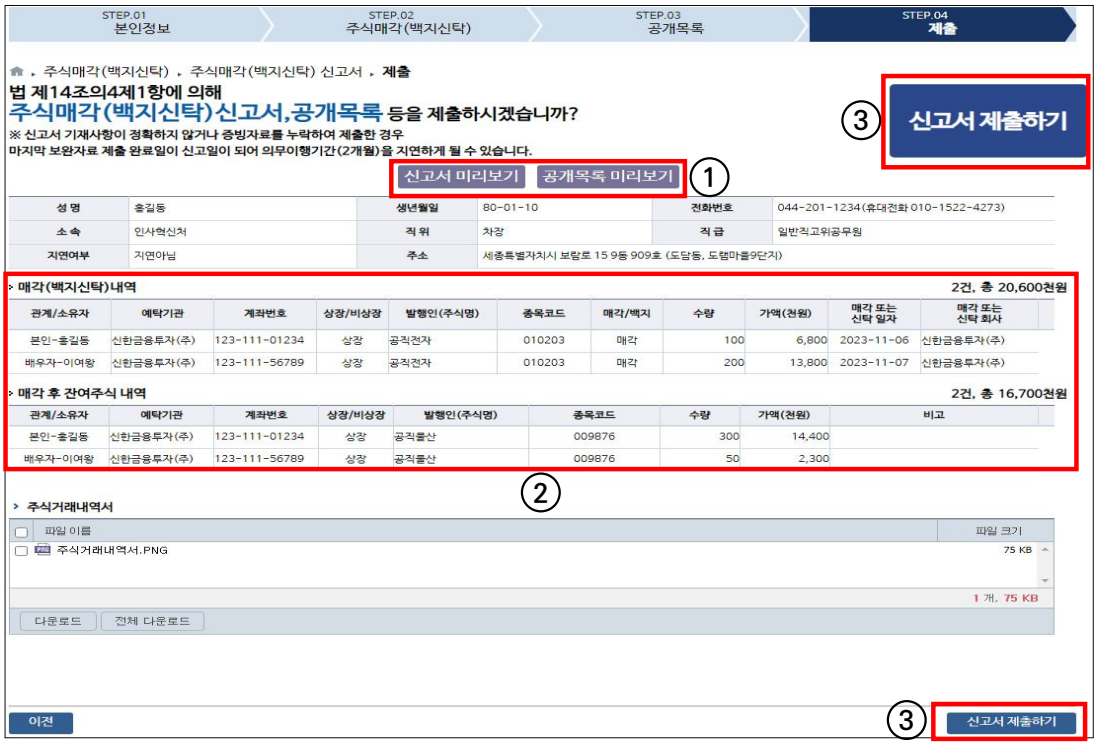

- ① 신고서 미리보기, 공개목록 미리보기 클릭하여 작성중인 신고서 최종 확인 및 출력 가능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전 클릭하여 해당화면으로 이동 후 수정

- ② 매각(백지신탁)내역 및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최종 검토

- ③ 모든 사항 검토 후 이상 없을 경우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하여 제출

발 행 일 2024년 12월

발 행 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재산심사기획과
TEL : 044-201-8467
TEL : 044-201-8482

인 쇄 처 한결엠(TEL. 02-6952-0551)

※ 이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의견이 있는 경우 인사혁신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